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28-01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2.

연구수행기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연구책임자 : 서진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선희 (중앙대 교수)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장)

권오용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연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 시윤희 (성공회대 박사과정)

황 환 (중앙대 박사과정)

김정은 (성공회대 석사과정)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6
3. 연구목적 및 의의	9
II. 선행연구 고찰	11
1. 편견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	13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내용분석 연구 고찰	14
가. 부정성의 반복적, 일관적, 과장적 제시 : 공정성/객관성 결여	15
나. 정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사용	16
다. 언어사용 : 경멸적, 비하적 용어	16
라. 기타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17
3.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편견요소의 유형화	17
가. 부정성의 과장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분석 기준	17
나.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19
다. 언어사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20
라. 기타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21
4. 편견 희생 집단에 대한 편견감소를 위한 방송 매뉴얼 고찰	21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2
나. 방송제작 매뉴얼-프로그램 일반 준칙 :	
차별의 대상 일반에 대한 매뉴얼	24
다. 신문 보도 매뉴얼 : 신문윤리실천요강	30

Ⅲ. 연구방법	35
1.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구방법	37
가. 텔레비전 모니터 활동 및 분석 대상의 선정	37
1) 대상 프로그램 선정 근거	37
2) 분석대상 프로그램 선정 방법 및 절차	38
나. 모니터링	44
1) 모니터링 수행자 선정 및 구성	44
2) 모니터링 수행자 교육	46
3) 모니터링 결과지 수집	47
2. 신문기사 분석 연구방법	47
가. 분석대상 신문기사 검색 조건	48
나. 분석대상 신문기사 선정	47
다. 신문기사 내용분석의 틀	49
1) 차별적 기사내용의 분석	49
2) 기사에 사용된 차별적 법률용어 파악	50
Ⅵ. 연구결과	51
1.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구결과	53
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53
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53
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64
3)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69
4)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70

나. 뉴스 모니터링 결과	81
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81
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85
3) ‘뉴스 다시보기’ 제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	90
4)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91
2. 신문보도 연구결과	100
가. 정신질환 관련 부정적 기사의 비율	100
나. 검색어별 부정적 기사 분포	101
다. 부정적 기사의 내용분석	102
라. 부정적 기사의 범주별 내용분석	104
1) 원인 편견	104
2) 난폭하고 위험함	105
3) 엉뚱하고 특이함	106
4) 부적응	106
5) 비하적 표현	106
6) 수치와 고립	107
7) 격리 필요성	107
8)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107
9) 불치와 부담	107
마.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의 내용 비교	108
바. 동일사건의 추가 보도	109
사. 신문기사에 사용된 법률용어	111

V. 매뉴얼 제시	113
1.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 하는 텔레비전 방송 매뉴얼 ..	115
가. 방송 언어표현에 대한 매뉴얼	115
나. 취재와 기사 / 원고 작성의 매뉴얼	117
다.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 사용에 대한 매뉴얼	127
1) 영상편집의 일반 원칙	127
2) 영상 미디어 편집 기법별 매뉴얼	128
2.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 하는 신문기사 보도 매뉴얼 ..	146
◎ 참고문헌	151

표 목 차

<표2-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 분석기준	18
<표2-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19
<표2-3> 경멸적/비하적 용어에 대한 방송 모니터 활동 분석 기준	20
<표2-4>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21
<표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3
<표2-6> KBS 및 MBC, SBS의 방송제작 매뉴얼	24
<표2-7> 신문윤리실천요강	31
<표3-1>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모니터 분석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목록과 제외 사유	38
<표3-2> 모니터 분석 대상 시사교양 프로그램	40
<표3-3> 각 방송사별 전체 뉴스 프로그램과 메인뉴스	41
<표3-4>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을 주제로 방송된 뉴스 프로그램	42
<표3-5> 모니터링 수행자 구성	46
<표3-6> 국내 5대 일간지 정신질환 관련기사 보도 현황	49
<표4-1> 관련기사 대비 부정적 기사 비율	101
<표4-2> 검색어 별,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 검색비율	101
<표4-3> 부정적 기사의 내용분석	103
<표4-4>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의 내용 비교	109
<표4-5> 부정적 기사의 반복 보도 행태	110
<표4-6> 신문기사의 차별적 법률용어 사용 현황	112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배경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편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며(Stout 등, 2004), 주거, 교육, 직업, 혼인 등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의 차별로 이어져, 정신장애인은 그 어떤 편견희생자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장혜경과 우아영, 2011; Corrigan 등, 2004; Link 등, 1999; Penn, 등 2003). 또한, 정신장애인 자신에게도 편견적 이미지의 내재화를 초래하여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적극적인 치료적 노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Brown and Bradley, 2002; Stout, 2004에서 재인용) 치료과정의 지연을 통한 문제의 악화 및 악순환을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신장애에 대한 스티그마는 정신질환 치료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WHO, 2001, Warner, 2005에서 재인용), 정신장애인 스스로도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Granello & Pauley, 2000),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이들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영향 요인은 대중매체로 나타났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매우 강력하고 때론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ltrane, 2000; Granello, Pamela, and Carmichael, 1999; Kamalipour, 2000; Ramasubramanian, 2007; Wilson 등, 1999), 신문보도를 통한 정신장애 관련 정보도 일반인의 사고는 물론 관련된 공공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ahl, 2003). 실제로, 미국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Wahl, 1995, Yankelovich Group, 1990), 정신장애인에게 붙여진 스티그마를 영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텔레비전이 주목된 바 있다(U.S. President's

4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Commission on Mental Health, 1978). 우리나라 조사의 응답자들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대중매체'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 2008),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국내외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에 대한 주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두 질환 모두에 대해 텔레비전 사건사고 뉴스와 드라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이선희와 서진환, 2010),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형성에 있어 대중매체 영향을 재확인해주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대중매체가 지적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들 대다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부정적인 정보의 반복적 노출과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의 제공이 만연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Berlin & Malin, 1991; Penn 등, 2003에서 재인용; Diefenbach, 1997; Eisenhauer 등, 2008; Fruth & Padderud, 1985; Signorielli, 1989; Stout 등, 2004; Wahl 등, 2003; Wahl & Roth, 1982; Wilson 등, 1999), 텔레비전 뉴스, 다큐멘터리, 그리고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매체와 프로그램에서 유형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성완 외, 2000; 이충순 등, 1996; 조수영과 김정민, 2010; Day & Oagem 1986; Shain & Phillips, 1991; Brawley, 1997 재인용; Wahl, 2003).

특히,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 신문기사 등 공공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혹은 독자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이 가져오는 편견유발 보도의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폭력적 범죄를 다루는 텔레비전 뉴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질환 관련 뉴스는 주로 사건중심 뉴스이고 이들 중 72.5%가 사고/사건/자살/범죄 관련 주제였다(조수영과 김정민, 2000). 이들 뉴스들은 대개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 등 끔찍한 범죄 장면을 강조하여 정신질환과 폭력간의 연관성을 전달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는 방송의 내용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장면의 제시 혹은 과장된 음향이나 조명 등을 통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강조하여 내용이 전달하는 영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장혜경과 우아영, 2011), 신문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위험하며 공격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등, 전체 관련 기사 중 70%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위험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위험한 인물로 표현하는 기사가 정신질환 관련 다른 기사보다 1면 기사로 보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완 외, 2000; Day & Page, 1986, Shain & Phillips, 1991, Brawley, 1997 재인용; Granello, Pauley, & Carmichael, 1999; Kaliebe & Sondheimer, 2002; Thornton & Wahl, 1996; Wahl, 2003).

또한,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신장애인 관련 정보의 상당수는 부정적일 뿐 아니라 부정확하고 편향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정신과적 용어의 부정확한 사용,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일반인의 혼동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Berlin & Malin, 1991; Penn 등, 2003에서 재인용), 빈번한 폭력성 과장도 대표적인 편향 보도의 예이다(Stout, 2004). 예를 들어, 교정기관 수감자의 6~15% 정도만이 주요 정신질환 진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Jemelka 등, 1989; Teplin, 1990),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92%는 폭력성을 나타낸 적이 없었고(Swanson, Holzer, Ganju, & Jono, 1990), 폭력 범죄로 체포된 비율도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아 입원경력이 범죄의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Cocozza 등, 1978),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인물의 폭

력성은 실제 인구집단에서의 정신장애인보다 10-20배 이상인 것으로 그려지는 등(Diefenbach, 1997),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폭력성이 매체를 통해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조사의 응답자들도 정신장애 편견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대중매체의 보도’를 지적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08),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 연구 필요성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 편향성과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 및 비판을 제기하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미디어 종사자들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구결과들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상당한 수준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해도 이들이 관련 미디어 업계에 직접 전달되어 용어나 표현 혹은 각종 편집 기법 등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이나 신체적 장애인 등 전통적인 편견 희생자에 대한 공개적 비방은 이미 대중매체에서 수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나 관련 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는 문제행동으로 인식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와 관련된 비하적 발언이나 용어는 여전히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관련자의 인식과 보도 행태 변화를 겨냥한 구체적 노력이 담보상태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초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에서 대형 총기난사 사건 이후 CNN이나 New York Post와 같은 세계적 언론사의 유명 진행자가 가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신원이 밝혀지기도 전에 서둘러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거나, ‘정신병자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대책이 없다’라는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

동에 대한 비난은 어디에서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Greg, 2007), 이를 통해 여러 편견극복 노력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극복 노력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인식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대상 집단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¹⁾(Vrij, 등 1996), 사회적 편견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또 다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데(장혜경과 우아영, 2011; Kaliebe & Sondheimer, 2002), 이는 미디어 제작 관련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민감성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한 이미지의 생산은 미디어 종사자의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시청률 확보 등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특정 집단의 고통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한 태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효과적인 개선방안일 수 있으나,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감성 증진 활동과 더불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정 인종이나 장애를 가진 인구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국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자나 신문 독자의 비판적인 활동을 통해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Englandkennedy, 2008; Ramasubramanian, 2007).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업계의 방송 및 보도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비판적 혹은 개어있는 미디어의 소비자(critical

1) 네덜란드의 인종적 편견감소 목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오히려 소수인종집단은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편견, 범죄경향이 있으며, 말썽을 일으킨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Vrij, 등 1996).

media consumer, 혹은 media watchdog)’가 되도록 하는 일종의 “미디어 역량 훈련(media literacy training)”으로, 시청자가 편향된 미디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서 의식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즉, 뉴스가 얼마나 자주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뉴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데, 미디어 소비자가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잘 의식하게 될 때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편향된 일차원적 묘사의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써,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깨어있는 소비자 운동의 좋은 예로 미국의 전미 정신질환자 당사자 운동인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의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미디어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하적인 이미지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편견적 묘사가 나타날 경우, 회원과 운동가를 중심으로 공식적 항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방송 편집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Corrigan, 2004)²⁾. 이러한 활동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편중보도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장면이나 용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나(국가인권위원회, 2008) 텔레비전 뉴스(조수영과 김정민, 2010),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장혜경과 우아영, 2011) 및 신문기사(김성완 등, 2000; 이충순 등, 1996) 분석이 각각 발표되어 우리나라 대중매체에 반영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2) 미국 정신장애인연대(NAMI)의 Stigma Buster 활동은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하적인 이미지가 발견될 때 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편지쓰기 운동 등을 벌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 2000년 ABC 방송의 지나치게 폭력성이 과장된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운동 결과 문제 장면들이 삭제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Corrigan, 2004).

미디어 관련업계에 직접 전달되는 등 방송 및 보도 행태 변화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관련 활동 단체 중심의 시청자 운동과 더불어, 미디어 업계를 겨냥한 반(反)차별 반(反)편견적 방송 및 보도를 위한 방송제작(보도) 매뉴얼과 같은 최소한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뉴스와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공정성, 정확성을 표방하고 있어 대중의 신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실체에 있어서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통해 대중의 주의를 끌며 시청률이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기제는 해당 장면이나 기사가 실제로 편견을 유도한다는 전문적 혹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텔레비전 뉴스와 시사 다큐프로그램 및 신문보도를 포함하는 대중매체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방송 및 신문보도의 매뉴얼을 도출함으로써, 반편견 반차별적 방송 및 보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텔레비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및 신문보도에 대한 모니터 분석을 통해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요소를 도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업계에서 관련 방송 제작이나 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하여 편견요소를 도출한 후, 국내에서 방송된 뉴스와 시사다큐 프로그램 및 신문 보도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10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니터링 활동 기준을 바탕으로 방송 및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실제 편견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확인·분석한다.

셋째, 장애인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사용해 온 방송제작 매뉴얼 및 보도 지침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반영한 정신장애인 대상 반차별 반편견적 방송 및 신문보도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이러한 매뉴얼은 미디어 관련 업계의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과 편견적 방송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민감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 관련 활동 단체의 시청자 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편견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

편견 관련 연구에서 매우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주요 영향요인은 대중매체로, 특히 영상매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매우 강력하고 때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oltrane, 2000; Granello 등, 1999; Granello and Pauley, 2000; Ramasubramanian, 2007). 더욱이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 객관적 사실로 전달되는 내용이 실제로 왜곡되거나 편파적임을 지적하는 연구와, 텔레비전, 영화, 혹은 광고와 같은 매체들도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유지시키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적임, 무식함, 범죄성향적임 같은 고정관념은 이들에 대해 적대적 편견을 갖게 하여 이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며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성, 객관성, 균형이 중요한 속성으로 알려져 있는 뉴스보도와 같은 매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납치나 테러와 같은 사건에 반(反)이슬람교 경향이 있을법한 사람이 피해자로 포함되었을 때마다 공격자가 무슬림임을 언급하는 보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을 때에는 헤드라인에 반드시 이를 기입하고,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무슬림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사용되는 등 대다수의 보도기자가 종교적 연고를 밝히는 작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슬림 테러리스트’, ‘무슬림 반란군’, ‘무슬림 게릴라’, ‘무슬림 근본주의자’와 같은 용어는 기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는 이제 대중들에게도 일상어로 스며들게 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견고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Kamalipour 등, 2000).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정관념은 어느새 ‘상식’이 되고 시청자들이 편견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관점의 틀로 자리 잡게 되며, 편향된 매체의 내용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여 별다른 의식적 노력 없이도 해당 집단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되며 (Ramasubramanian, 2007), 영상을 통해 관찰한 이미지가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이해와 해석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Press, 1991, Coltrane 등 2000 에서 재인용).

연구자들은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 예측불가능성, 공격성, 무능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줄 경우, 정신장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접촉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텔레비전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게 되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두려운 존재이며,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거나, 비참한 환경에서 구박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모습이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텔레비전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tout 등, 2004). 실제로 미국과 국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으며, 자신의 편견은 이를 통해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서미경 등, 2008; Wahl, 1995, Yankelovich, 1990).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내용분석 연구 고찰

정신장애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편견을 초래한 내용 연구는 방대하다. 부정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대중매체는 신문, 영화, 뉴스, 드라마, 만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하여 이는 매체유형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전반적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정성의 반복적, 일관적, 과장적 제시 : 공정성/객관성 결여

편견은 부정적 표상과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거나 지지하는 이미지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반복적’으로 제시하게 될 때 형성된다. 전체 정신장애 중에서도 심각한 정신증적 장애가 더 자주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적절하고 혐오 적이고 위험한 사람,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Eisenhauer, 2008; Stout 등, 2004). 또한 가장 일관되게 제시되는 이미지는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황금시간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정신질환자 역할의 72%가 폭력성을 보이며 이들 중 20%는 살인을 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다(Signorielli, 1989). 또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 역할이 포함된 14개 드라마에서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위험성/공격성, 단순함/유치함, 예측하기 어려움, 실패하기 쉬운/비생산적, 비사교적, 나약함, 위험성/무능함, 신뢰하기 어려움, 보호적/공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쫓겨남’이 극중 전개에 따라 섞여서 사용되고 있었다(Wilson 등, 1999). 아동대상 매체에서도 정신장애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상당수의 만화 프로그램에서 정신장애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Wahl 등, 2003), 디즈니 영화의 85%는 정신질환 관련 내용, 주요 인물의 21%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언급되었다. 정신질환 관련 기사에서는 폭력, 범죄, 위험성, 예측불가능성이 빈번하게 포함되었다(Day & Page, 1986, Shain & Phillips, 1991, Brawley, 1997 재인용). 또한,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치료를 받지도 않고 받으려하지도 않으며, 감금만이 이들을 통제하여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 것으로 그리고 있어, 결국 이러한 오해와 근거 없는 두려움은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지적되었다(Wahl, 1995, P. 76).

나. 정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사용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상당수는 부정확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적 사건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뉴스와 같은 매체나 드라마나 영화같이 허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고되고 있다(Wilson, 등 1999). 흔히 뉴스보도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매체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자들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구성된 해설’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의 상당수가 부정확하여 정신장애의 특성에 대해 일반인의 혼동을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는데(Berlin and Malin, 1991, Penn 등에서 2003 재인용), 정신과적 질병(mental illness)과 정신병질(psychopath)의 혼동, 정신분열병과 해리성정체감장애의 혼동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정신질환명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언어(예 person with a SPR을 Schizophrenic이라 함)도 지적되고 있으며(Stout, 2004), 뉴스보도의 경우 가치 판단 적이며 비객관적, 추론적 표현의 사용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Greg, 2007; Ibrahim 등, 2012).

이처럼 잘못된 정보전달, 정신과적 용어의 부정확한 사용 등도 다양한 비우호적 고정관념과 편견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tout 등, 2004). 우리나라 조사의 응답자들도 정신장애 편견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대중매체의 보도’를 지적하고 있어(서미경 등, 2008),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 언어사용 : 경멸적, 비하적 용어

정신장애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나 언어적 표현의 주요 특성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멸적, 비하적 용어(nuts, crazy, loon 등)가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아동만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에 대한 언어적 비하나 부정적인 신체적 특성 묘사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Wahl 등, 2003).

라. 기타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한편, 상기한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결여는 전달 내용 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편집기법을 통해서 강조,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 역할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외모나 옷차림을 통해서, 배경 음악과 음향효과, 조명과 카메라 앵글의 사용, 자막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송 기법의 편향된 사용이 편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장혜경과 우아영, 2011; Wilson 등, 1999; Stout 2004에서 재인용)도 편견 형성과 유지에 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3.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편견요소의 유형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내용분석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편견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틀로 개발하였다.

가. 부정성의 과장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분석 기준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된 부정성의 반복적, 일관적, 과장적 제시로 지적되고 있는 편견요소의 모니터 활동을 위해 2008년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조사(200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위험, 회복불능, 식별가능, 무능)과 외국의 선행연구에서(Eisenhauer, 2008; Stout 등, 2004; Wahl, 1995; Wilson 등, 1999)

제시된 편견의 패턴을 비교/통합하였는데,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08)에 근거한 네 차원을 보다 세분화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유형 중 본 연구 목적과 맞지 않은 보호적/공감적(caring/empathic) 차원을 제외하고 실패자/비생산성, 무능성으로 인한 위험성 및 유치함의 차원을 무능함이라는 한 개 범주로 묶었으며, 두 가지 준거 틀의 모든 차원을 통합하여 최종 열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한 후 차원의 성격에 따라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각 차원 및 범주별 편견요소 예(방송사례)를 제시하였다(<표2-1>).

<표2-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 분석기준

인권위 (2008)	외국 선행연구 통합	부정성 차원	하위 범주	편견요소 예(방송사례)
위험	dangerous/aggressive	위험성/공격성/폭력성 부각	의도적 편향(범죄 통계왜곡 및 추론적 표현)	사회전체 범죄율 대비 정신질환자 범죄율, 혹은 전체 정신질환자 추정인구 대비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률에 대한 제시 없이 정신질환자 범죄율만 보도하는 경우, 뉴스와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적을 때 예도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도, 범죄와 정신질환 병행 제시
			불안감을 불필요(과도하게) 자극	난폭하고 충격적인 사례만을 연속적으로 제시, 내러티브의 반복 사용(예; '무섭다' 표현을 15번이나 사용) '공포의 무법자' '거리의 무법자' '방치된 무법자'(무법자로 고정), 열기적, sensational한 사건과 정신질환 연관 지어 방송, 사회에 위험이 되니 피해야 한다는 내용
	unpredictable	예측불가성		적절한 근거나 이유 없이 erratic 한 모습 제시, 갑자기 감정 폭발, 갑작스런 무드변화
회복 불능		회복불능		정신질환을 고칠 수 없다
식별 가능/비정상		식별가능성/비정상성	눈에 띄는 외모, 독특한 캐릭터	고정적인 신체특징 표현을 통한 이미지 고정화(unruly hair, widely spaced and/or rotting teeth, a prominent nose, heavy brows with thick arched brows(악당), narrowed artificial eyes(악당), large round eyes(코믹한 캐릭터), 혼잣말, sinister, evil, criminal 이미지
	vulnerable	가없음/비참함		비참한 환경에서 구박받는 모습의 빈번한 노출(charity case model) (->이들을 대하는 방식 학습하게 됨)
무능성	failureprone/unproductive dangerousness/incompetent simple	무능성	실패자/비생산성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찰이 없다는 인식,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타인(원조자나 지원자)보다 부족하다는 인식,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돌보며 살 수 없는 인물로 묘사, 자기 삶을 통제 못함 굵뜨고, 지나치게 신중한 행동,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하거나 너무 쉽게 주의집중을 못하거나, 간단한 결정도 혼자 못 내림

	/childlike	무능으로 인한 위험	운전부주어나 스토브도 끄지 못하여 자신과 타인에 위험 초래
		simple/childlike	일상의 성인역할을 이해 못하거나 수행 못하는 것으로 보도 (예: 간단한 문장만 구사, 아이 같은 목소리)
	asocial	비사교성	사람들과 못 어울림
	untrustworthy	신뢰 못함	믿을 수 없는 사람
	caring/empathic		
	social outcast	사회의 짐/버림받은 존재	better-off dead message 전달,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 lacking social identity
	치료거부자 감금/배제의 대상	감금의 대상/ 사회적 배제 대상	침대에 묶이는 등 신체적 구속이나 입원환자 모습 반복적 제시, (->신체구속을 일상화 함)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배제하여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8), Eisenhauer(2008), Stout 등(2004), Wahl(1995), Wilson 등(1999).

나.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부정확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편견요소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외국의 선행연구(Berlin & Malin, 1991, Penn 등, 2003에서 재인용; Greg, 2007; Ibrahim 등, 2012; Stout, 2004)에서 지적된 부정확성 편견 요소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는 요소들을 범주로 묶어서 모니터링 활동에 사용될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일반인을 혼동시키는 내용,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치 판단적, 추론적 표현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표2-2>).

<표2-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부정확성 차원	하위범주	편견요소 예(방송사례)
부정확한 정보전달의 만연함	단선적 발병 원인 설명	생물학적 견해(예; 신경전달물질 분비)는 정신장애 원인의 여러 설명 중 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 한 가지만을 전문가의 단언적 설명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정신장애라는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어냄.
	전문용어의 부정확한 사용	mental illness와 psychopath의 혼용. 정신분열병과 해리성정체감장애의 혼용.

	질환명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언어 사용	person with a SPR을 schizophrenic으로 지칭.
	다른 장애와 혼동	mental retardation 과 mental illness 혼동.
	질환 전체 일반화	정신질환명 대신에 ‘정신질환’ 사용 예) mental illness 와 psychosis를 유사어로 사용하거나, 정신질환 전체를 통틀어 사용하는 경향. (이전에 갖던 MI 인식을 모든 정신장애에 일반화하게 됨.)
	특정 장애 위주	심각한 정신병적 장애만을 주로 제시(severe psychotic disorder)
가치 판단적 / 추론적 표현을 통한 편향된 시각 조성		저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출처: Berlin & Malin, 1991, Penn 등, 2003에서 재인용; Greg, 2007; Ibrahim 등, 2012; Stout, 2004.

다. 언어사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정신장애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나 언어적 표현으로 경멸적, 비하적 용어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Wahl 등, 2003; Stout 등, 2004) 이러한 언어사용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활동에 사용될 분석기준으로 도출하였다(<표2-3>).

<표2-3> 경멸적/비하적 용어에 대한 방송 모니터 활동 분석 기준

언어 표현 차원	편견요소 예
경멸적/비하적 표현	nuts, crazy, mad, loon, wacko, cuckoo, deranged, twisted, driven bananas, insane, freak, lunatic, losing your mind

출처: Wahl 등, 2003; Stout 등, 2004.

라. 기타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대중 매체 중에서도 특히 영상매체의 경우 다양한 편집기법을 사용하여 편견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지적한 연구(장혜경과 우아영, 2011; Wilson 등, 1990, Sout 2004에서 재인용)에 따라 이러한 방송 편집기법의 요소 및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모니터 활동에 사용될 분석 기준으로 도출하였다(<표2-4>).

<표2-4> 다양한 매체 활용 기법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기준

편집기법 차원	편견요소 예
음악과 음향	타악기 중심의 불안정한 느낌의 배경음악
조명과 배경화면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조명
자막	자극적 색채의 자막, 과도한 크기의 자막
카메라 앵글	흔들리는 카메라로 범죄현장을 훑어봄으로써 ‘충격적’ 사태를 부각
의도적 영상 삽입	사건/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공포스러운 사진이나 장면 삽입
불필요한/ 부적절한 재연	재연임을 명시 안하는 경우, 사건 재연 시 흥기 등을 강조
모자이크	수치심 등에 대한 제작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모자이크 사용

출처: 장혜경과 우아영, Wilson 등, 1999.

4. 편견 희생 집단에 대한 편견감소를 위한 방송 매뉴얼 고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 전통적 편견 희생 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방송사별 방송제작 매뉴얼의 일부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전통적 편견 희생 집단에 대한 매뉴얼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한편, KBS에서는 특별히 장애인 관련 방송제작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유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길라잡이’를 제시하는 등 장애인을 겨냥한 별도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도 이러한 심의규정 및 방송사별 매뉴얼에서 명시된 사회적 약자이며 따라서 이들 규정이나 매뉴얼의 준수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제작과 편집과정 상에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오히려 대중매체를 통해 조장,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존의 매뉴얼을 검토,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반편견/반차별 방송 매뉴얼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방송 내용의 심의나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심사, 혹은 시정요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988년 10월 18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통합 방송법 제정을 거쳐 2002년 4월 2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심의규정이 마련되었다. 심의 규정의 내용 12 가지 중에서³⁾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은 정신장애인 관련 방송에도 관련 있는 내용으로, 향후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

3)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사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양성(兩性) 평등에 관한 사항,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시정 및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용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는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p>1. 총칙</p> <p>-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p> <p>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p> <p>2. 제 1절 공정성</p> <p>-제9조(공정성)</p> <p>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p> <p>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p> <p>3. 제 2절 객관성</p> <p>-제14조(객관성)</p> <p>①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출처명시)</p> <p>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p> <p>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p>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p> <p>4. 제 5절 소재 및 표현기법</p> <p>-제36조(폭력묘사)</p> <p>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p>-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p> <p>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p>
--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나. 방송제작 매뉴얼-프로그램 일반 준칙: 차별의 대상 일반에 대한 매뉴얼

각 방송국에서는 방송심의규정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방송제작 매뉴얼 및 프로그램 일반 준칙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KBS와 MBC, SBS의 방송제작 매뉴얼 중 본 연구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매뉴얼 도출의 틀로 재정리하였다.(<표 2-6>)

<표2-6> KBS 및 MBC, SBS의 방송제작 매뉴얼

고정관념 조장	
KBS	KBS 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의 종사자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거나, 노인을 무능력자로, 전과자를 범죄인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등의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SBS	범인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건 보도에 ‘정신 장애인의 소행인 듯’과 같이 보도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대상규정	
KBS	2) 차별의 대상 장애인, 노인, 여성, 북한주민, 외국인, 기타
MBC	9) 장애인, 약자 보호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웃음의 소재로도 삼지 않는다.

SBS	6. 배려해야 할 취재 대상자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하나의 인격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과남을 갖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과 역할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언어표현
KBS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작자는 의식의 저변에 대한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MBC	어떤 프로그램도 시·청취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BS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누구나 동등하게 취급해야하며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2. 적정한 표현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중략) 또한 잔혹하거나 비참한 것을 표현할 때에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의 기본원칙(취재/기사 및 원고 작성과정)
KBS	9. 사실 의견 진실 보도 프로그램과 사실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작자, 출연자의 의견이나 판단이 보태지기도 한다. 특히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의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심층 취재나 분석 논평 기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기자나 앵커의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자의 의견 개입이 훨씬 용이하다. 단정적으로 말해, 사실 프로그램에서 제작자의 의견이나 관점은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현실 세계에서 얻은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것(연출) 자체가 제작자의 개입과정이고 또 그것이 방송제작자의역할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양심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MBC	가. 정확성 MBC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제나 소재를 막론하고 취재 내용

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 취재 제작진은 제보나 향간의 소문,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방송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는 그 제보자 혹은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방송해야 한다.

나. 공정성

(중략)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취재 제작진의 당초 기획 의도와 실제 취재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취재를 할 때 당초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해 방송에 반영하고 기획 의도에 반하는 취재 내용을 외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찬반양론이 있을 경우, 취재 제작진은 대립되는 양측의 주장을 단순히 열거하는데 그치지보다는 각 측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재하고 전달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 다양성

(중략) 어떤 사회현상이나 갈등 문제 등을 다룰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경우 가급적 다양한 사회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소개한다. 또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존재할 때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취재해 알려야 하는 동시에 소수의의견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라. 사회적 책임

취재 제작진은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정적 효과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사나 원고는 취재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추측이나 의견, 판단은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도 삼가야 한다. 특히 범죄 보도에서 그 수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p>SBS</p>	<p>1) 진실보도 방송프로그램 특히 보도, 정보프로그램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견을 나타낼 경우에는 의견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도, 정보프로그램의 취재, 제작과정은 제작자의 주관적 판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자의적인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원칙은 중시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p> <p>2) 공정성 방송제작에 있어 공정성은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송에서 공정성의 실천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앵글의 선택에서부터 영상의 편집, 출연자의 선정에서 편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와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된다. (중략)</p> <p>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항상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권력 집단에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현장에 있어서도 늘 냉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p>
<p>영상편집</p>	
<p>KBS</p>	<p>(1) 인권에 대한 배려 편집자는 편집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사려 깊은 편집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p> <p>(2) 편집의 객관성 유지 편집자는 편집에 있어서 ~~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 편집의 객관성은 단순히 동일한 시간배분 같은 1차적인 균형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집자는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p> <p>(6) 이미지 커트 이미지 커트는 취재대상에 대한 제작자의 이미지를 실사로 바꾼 영상을 말한다.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 커트 사용은 표현의 주요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커트는 제작자만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이미지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뉴스에서의 사용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이미지가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p>

<p>MBC</p>	<p>(1) 영상 편집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편집이 요구된다. 편집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편집은 자제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배려해야하며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p>
<p>SBS</p>	<p>5. 주의해야 할 영상 가공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가능하면 실사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재원 보호나 초상권 보호,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 가공을 할 수 있다. 영상의 가공 빈도가 많아지고 편집의 재량 범위가 확대될수록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자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중략) (3) 이미지 영상이미지 영상은, 추상적인 내용의 밑그림이나 재연의 대체 영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방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표현으로 시청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 사실적인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이미지 영상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나. 폭력, 성적 표현 등의 강렬한 이미지는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영상 처리 시 주의해야 한다.</p>
<p>자막과 영상 가공</p>	
<p>MBC</p>	<p>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잡한 글씨체, 과도한 크기의 자막 등은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영상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p>
<p>SBS</p>	<p>1. 방송 자막에 관한 지침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다.(중략) 왜곡된 글자 형태나 현란한 색상 등을 사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자막은 시청자들의 시청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p>

음악음향사용	
KBS	<p>2) 음악과 음향</p> <p>(1) 음악의 사용 (중략) 특정 이미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음악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p> <p>(2) 음성과 음향 (중략)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어조 및 억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효과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현장음이 중요한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효과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MBC	<p>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취재영상에 담긴 현장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악과 효과음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스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음악과 효과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p>
SBS	<p>5. 주의해야 할 영상가공</p> <p>4) 효과음 처리 영화나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의 효과음 사용은 사실성과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뉴스의 경우, 효과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자연음의 대체가 아닌 코드성 효과음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코드성 효과음을 사용할 때에도 방송 수용자의 감정이나 판단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재연	
KBS	<p>① 시청자가 재연된 영상을 실사(현실을 기록한 영상)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멘트 등으로 재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p> <p>② 중요한 사실을 생략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재연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p> <p>③ 재연은 가능한 한 섬세한 사항까지 사실과 일치하도록 연출한다. 필요 하다면 재연이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p>

	<p>한계를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 재연 시 폭력과 흥기, 상처, 성표현 등을 줄거리와 관계없이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④ 뉴스에서의 재연은 원칙적으로 삼가야 한다.(중략)부득이 재연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재연과 실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p>
MBC	<p>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실제 영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p>
SBS	<p>재연 영상은 증언이나 자료를 기초로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연 영상은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영상 수단이다. 그러나 재연의 남용은 방송의 신뢰성과 리얼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p> <p>나. 재연 영상 방송 시 시청자들이 실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이나 멘트로 재연임을 밝혀야 한다. (중략)</p> <p>라. 재연 시 과도한 폭력과 흥기의 노출,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을 피해야 한다.</p> <p>마. 원칙적으로 뉴스에서는 재연을 하지 않는다.</p>

출처 : 문화방송(2009). MBC 방송제작 매뉴얼; 한국방송(2010). KBS 방송제작 매뉴얼; 한국방송(2011). KBS 장애인 관련 방송 제작 매뉴얼; SBS(1998). SBS 방송매뉴얼

다. 신문 보도 매뉴얼 :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 보도의 경우,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일부를 발췌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문보도의 매뉴얼 개발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각 언론인들은 이의 준수를 다짐하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7>).

<표2-7>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중략)

-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중략)

-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중략)

-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중략)

-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 준칙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방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 보류시한

(중략)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 ② (정신이상자의 익명조건)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

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진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중략)

- ⑤ (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자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 ④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⑥ (관련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제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제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개인의 명예? 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④ (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출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1996)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중매체 중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신문기사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구방법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정신장애 이미지의 성격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활동 기준을 근거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통합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방송국에서 이미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 방송국별 사회적 약자보호에 목적을 둔 주요 매뉴얼을 통합 분석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통합된 결과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매뉴얼 도출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텔레비전 모니터 활동 및 분석 대상의 선정

1) 대상 프로그램 선정 근거

본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의 **교양/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정한 주요 이유는, 이들 프로그램이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특성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 일반 시청자의 신뢰가 높아 그 영향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이선혜와 서진환, 2010) 우리나라 성인들이 정신분열병에 대해 알게 되는 주요 정보원이 텔레비전 뉴스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결과임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주로 사건사고를 보도하거나 사회문제 고발을 위주로 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감소라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다.

2) 분석대상 프로그램 선정 방법 및 절차

공중과 방송인 KBS 1, KBS 2, MBC, SBS 방송 홈페이지 교양/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중 최근 1년 동안(2011년 7월 ~ 2012년 6월)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색어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이상’ ‘정신분열’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교양/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각각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텔레비전 시사·교양

2011년 7월 ~ 2012년 6월까지 1년간 상기한 검색단어 7개를 주제어로 검색해 본 결과 총 33개의 프로그램 제목이 검색되었다. 이들 제목에 대해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시행해 본 결과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보기가 안 되는 프로그램 4개를 제외하여 총 29개 프로그램을 1차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29개의 1차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를 통해 실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내용상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20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의 편견조장 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감소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에 있으므로, 자살관련 내용과, 단순한 질병소개와 예방법 보도, 정신장애 치료와 예후에 대한 긍정적 소개 프로그램 등은 연구주제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모니터 분석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목록은 <표3-1>에 제시되어 있다.

<표3-1>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모니터 분석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목록과 제외 사유

날짜	방송사	시리즈명	프로그램명	제외 사유
110730	SBS	그것이 알고싶다	애나사건, 성폭행의 진실은?	다시보기 안됨
110908	KBS2	호루라기(14회)	어느 선교교회의 비밀	

111007	SBS	궁금한 이야기 Y (92회)	8년간 성추행 당한 아이들. 진실은 무엇인가	Focus 맞지 않음
111122	MBC	생방송오늘아침 (1373회)	교회가기 싫어서 살인한 40대 남성	
110707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신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수면장애	
110811	MBC	생방송오늘아침 (1301회)	피병으로 오해받는 외로운 통증, 섬유근육통	
111004	MBC	생방송오늘아침 (1338회)	아파죽겠다, 악마의병! 만성통증증후군	
111117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668회)	천성산 로빈슨크루소	
111128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64회)	날아올라 하늘높이	
120111	MBC	생방송오늘아침 (1409회)	'아내'가 사라진 집!	
120125	MBC	생방송오늘아침 (1417회)	버스은행 도중 실신, 이상증세까지. 그날 무슨 일이?	
120612	MBC	생방송오늘아침 (1516회)	"다시 살자", 전처 찾아가 분신한 남편의 진실?	
111130	SBS	생방송 투데이(638회)	무관심이 부른 부부위기	Focus 벗어남
120112	KBS1	현장르포동행(183회)	우울증 엄마와 스마일맨 아빠의 겨울	
120329	KBS1	현장르포동행(194회)	그래도 우리 엄마	
111130	KBS2	비타민(412회)	죽음과도 같은 고통! 찢고 또 찢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강박증의 모든 것!	
110708	SBS	생방송 투데이(541회)	29Kg폭풍감량! 아줌마 "김태희"되다	내용 관련 없음
110826	SBS	생방송 투데이(515회)	2달 만에 19Kg감량하고 산후우울증 극복!	
120116	SBS	100세 건강스페셜(228회)	신년특집 한국인의 4대 질병 -우울증	`단순 우울증
120219	MBC	V 건강프로젝트 9988에 도전한다(10회)	마음의 독감, 우울증	
120425	MBC	기분좋은날(1401회)	<주부우울증 예방과 치료> 주부가 행복해야 가족이 산다	

40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120627	KBS2	비타민(442회)	100세 시대 부부건강법 -부부 우울증	
111022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자살생존자, 그들에게 손길을	자살
120420	MBC	기분좋은날(1398회)	악마의 다이어트! 먹는 것이 고통인 사람들! 폭.식.증!	섭식 장애

상기한 방식의 선정 작업을 거쳐 최종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총 9 개이며, 이는 <표3-2>에 제시되어 있다.

<표3-2> 모니터 분석 대상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영 날짜	방송사	시리즈명	프로그램명
110712	MBC	생방송 오늘아침(1279회)	주병진도 피해갈 수 없었다! 주부우울증 혹시 나도?
110916	SBS	궁금한 이야기 Y(89회)	컨테이너 감금 10년째, 엄마는 왜 아들을 가둬야 했나
111025	MBC	PD 수첩(923회)	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
111212	MBC	생방송 오늘아침(1387회)	이유없이 쭈시고, 결린다면?! 나도 혹시 우울증?
111217	SBS	그것이 알고 싶다(829회)	기억과의 사투
111226	MBC	생방송 오늘 아침(1397회)	생후 50일 된 딸을 방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 대체 왜?!
120228	SBS	현장 21(47회)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120406	MBC	생방송 오늘 아침(1469회)	"이유없어!" 남의 자식 무차별 폭행한 학부모
120424	MBC	생방송 오늘 아침(1481회)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② 텔레비전 뉴스

방송사별 시간대별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 뉴스 프로그램의 전체 개수는 모두 23개이나,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해당 일에 방송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방송사별 메인 뉴스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방송사별 전체 뉴스프로그램 23개 가운데 메인뉴스는 5개이며, 이는 각각 KBS1의 뉴스 9, KBS2의 아침뉴스타임과 일요뉴스타임,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 뉴스이다(<표3-3>).

<표3-3> 각 방송사별 전체 뉴스 프로그램과 메인뉴스

방송사	뉴스 명	메인뉴스
KBS1	뉴스광장	
	930뉴스	
	뉴스12	
	뉴스5	
	뉴스7	
	뉴스9	v
	뉴스라인	
	마감뉴스	
KBS2	아침뉴스타임	v
	일요뉴스타임	v
	뉴스타임	
MBC	뉴스투데이	
	930뉴스	
	정오뉴스	
	3시 뉴스	
	이브닝뉴스	
	뉴스데스크	v
	뉴스24	
SBS	아침종합뉴스 (출발 모닝와이드)	

	12시 뉴스	
	뉴스퍼레이드	
	8시뉴스	v
	나이트 라인	

각 방송사별 메인뉴스에서 지난 1년(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동안 상기한 7개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한 결과, 본 연구에서 모니터 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는 총 38개 이며, 이들을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통해 검토한 결과, 실제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뉴스 7개와 해외 뉴스 2개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 뉴스 목록 29개를 도출하였다(<표 3-4>).

**<표3-4>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을 주제로 방송된 뉴스 프로그램
(2011년 7월~2012년 6월)**

방송사별 메인 뉴스	보도내용	방영 날짜	누락
KBS 1 뉴스9	약물 든 음료수 강도사건 용의자 부부 검거	110623	○
	유전자 변이 RNA에서도 발생' 중대 발견	110704	○
	불량 국제결혼 중개업, 처벌은 있으나 마나	110726	○
	[이슈&뉴스] 술 취한 한국 사회 '처벌,치료 병행해야'	110920	○
	[이슈&뉴스] 길거리 공포, '묻지마'범죄	111107	
	찾김에 ...' 분노 범죄, 폐지 줍는 할머니를	111125	
	[지구촌] 홍콩 대형 화재 9명 사망	111130	○
	버스 운전기사 '정신 이상' ... 광란의 질주 '아찔'	120120	

KBS2 아침뉴스 타임	6개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 진실은	110923	
		정신병원 환자 3명 집단 탈주, 살해 '위협'	111013	
		국내 첫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공식 확인	111129	0
		대낮 백화점 임신부 상대 인질극 '묻지마' 범행	120112	
		모성 버리는 병 '산후 우울증'	120320	
		정신질환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져	120405	
KBS2 일요뉴스 타임	1개	[월드투데이] 모래폭풍이 불더라도 영원히... 外	111030	0
MBC 뉴스 데스크	17개	해병대 총기 사건, '기수 열외' 때문에	110705	
		해병대 2사단 장교 목매 숨진 채 발견	110810	
		갓난아기 4명 버린 '비정한 엄마' 30대 여성 입건	110819	
		장애인 쫓아낸 이웃 '징역형' 각서까지 받아내	110921	
		'묻지마 범죄' 만연..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시급	110929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	110930	
		[단독] 9개월 영아 의문사 아기 부모 의혹 부인	111020	
		"공황장애 앓고 있다" ..혹시 나도?	120109	
		[단독] '채팅男'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성폭행		
		백화점서 임신부 인질극 이 땅에 천국 세우려?	120111	
		정신이상 증세 고속버스 기사 '광란의 질주'	120120	
		[사건사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자녀3명 숨진 채	120121	
		성인 6명중 1명 '정신질환' 병원 치료는 기피	120215	
		[사건사고] 생활고 비판 40대母 두 딸 살해 후 도주	120310	
집중력 결핍장애 환자 증가 80%가 남자어린이	120509			
서울대학교 기숙사 옥상서 학생 '투신자살'	120521			

		어릴 적 학대 등 정신적 충격 우울증으로 발전 '위험'	120604	
SBS 8시뉴스	6개	공포의 기억' 지울 수 있다. 치료 길 열려	111226	
		마음이 아파요' 청소년 정신건강, 현 주소는	120116	
		고속버스 갑자기 '회청' 운전기사 통증에 사고	120122	0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울증 크게 늘어	120215	
		암흑의 터널로 매일 출근. '공포의 1인 근무'	120313	0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	120325	

나. 모니터링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뉴스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 발된 모니터링 수행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 후 각 그룹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한편, 뉴스의 경우, 전체 뉴스 방 송시간 중 해당 주제에 대한 방송은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일반 모 니터링 수행자들이 이들을 텔레비전 다시보기를 통해서 일일이 해당 방송 부분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아 모니터 그룹에 본 연 구진 두 명이 일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후 모니터링 결과의 객 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관련 연구모임의 회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 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 후 이 팀에 본 연구진 한 명이 합류하여 모니터 링을 수행하였다.

1) 모니터링 수행자 선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편견조장의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모니 터링하여 이의 감소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거나 이들에 대한 편견이슈에 대해 민감성과 비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시청자 집단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사/교양의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3명),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3명) 및 대학생(3명), 그리고, 장애인 활동 단체의 활동가(2명)를 포함한 총 18명, 총 네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뉴스의 경우 본 연구의 보조연구원 2명과 이 연구원 중 1명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모임 회원 6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3-5>).

우선,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모니터링 수행자는 한국정신장애연대의(KAMI) 사무총장을 접촉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연구수행에 적절한 회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하였고, 대학원생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홍보한 결과 참여희망자 중 모니터링 수행자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경우 2011년 2학기 본 연구책임자의 학부 강좌인 <정신건강론>를 수강한 학생 중 본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을 때 가장 우수한 과제를 제출했던 학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단체의(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해당 단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로,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대한 항의 전화 등 반편견/반차별 활동경험이 있는 참여 희망자로 구성하였다.

한편, 뉴스의 모니터링을 수행한 연구모임은 빈곤 및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30대 후반 ~ 50대 후반 성인으로, 본 연구의 보조연구원이 해당 연구모임 중에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모니터링에 참여의사를 보인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표3-5> 모니터링 수행자 구성

		모니터링 수행자 유형	소속	인원
시 사 / 교 양	1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한국정신장애연대(KAMI)회원	3
	2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3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신건강론 수강생	3
	4팀	장애인 활동 단체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 상근 활동가	2
뉴 스	1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보조연구원	2
	2팀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복지국가론' 스터디 회원	6

2) 모니터링 수행자 교육

상기의 방식으로 선정된 시사/교양 모니터링 수행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모니터링 시행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2년 8월 24일 시행된 1차 교육에는 정신장애인 가족 2명을 제외한 모든 모니터링 수행자가 참여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시행된 2차 교육에는 1차 교육에 참여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 1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2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모니터링 수행자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첫째, 본 연구의 취지, 목적과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한 개요 설명, 둘째, 선행연구 고찰 결과 도출된 모니터링의 기준 설명, 셋째, 상기 9개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 한 개 프로그램(**PD수첩 “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MBC)**)을 샘플로 함께 시청하면서 기준별 모니터링 요령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모니터링 수행 시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팀별로 구성원이 모여서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하여, 편견 조장의 우려가 있는 장면이나 내용에 대해 조원이 합의하여 미리 준비한 모니터링 결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뉴스 모니터링의 경우 ‘복지국가론’ 스터디 워크숍에서 보조연구원이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세 개의 뉴스 프로그램을 샘플로 함께 시청하면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한 후,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원 1인과 이들이 한 팀으로 프로그램 시청 중 해당 장면에 대해 논의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3) 모니터링 결과지 수집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 최종 선정된 9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서 네 팀의 모니터링이 각각 이루어져 프로그램 한 개당 네 가지의 모니터링 결과가 도출되어, 총 35개의⁴⁾ 모니터링 결과지가 수거되었다. 뉴스의 경우 최종 선정된 29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두 가지의 모니터링 결과가 도출되어 총 58개의 모니터링 결과지가 수거되었다.

2. 신문기사 분석 연구방법

신문기사 분석은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 상에서 정신장애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를 통해 묘사되는 정신질환(장애)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내용분석의 틀을 도출했으며, 정신질환 관련 법률용어 가운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틀에 포함시켜 용어의 출현 빈도를 집계하였다.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었다.

4)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팀인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에서 모니터 교육 시 수행한 PD 수첩 “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의 경우 모니터 교육 시간에 시청 중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여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음.

가. 분석대상 신문기사 검색 조건

첫째, 최근 1년 동안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2011년 7월 1일~ 2012년 6월 30일로 설정했다.

둘째, 국내의 대표적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고자, 경향, 동아, 조선, 중앙일보, 한겨레의 5개 신문사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각 신문사별로 해당 기간에 보도된 전체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검색어(7개)를 사용하여 기사를 검색했다. 검색에 사용된 용어는 우울증, 정신이상, 정신질환, 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정신장애 이었다.

나. 분석대상 신문기사 선정

위 기준에 따라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2,259건이 관련기사로 검색되었으며, 이를 다시 신문사별, 분기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결과는 <표3-6>과 같다. 내용분석을 위한 기사를 선정하고자 검색된 기사 2,259건을 전수 검토하였고 그 중 “부정적 기사”, 즉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보도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차별적 보도의 소지란 직접적으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그런 내용을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사는 총 258건으로 전체 관련기사의 11.4% 이었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된 기사이며, 동일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사를 보도한 경우는 동일기사의 중복 보도와 구별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별개 건으로 취급했다. 동일 내용을 다른 기사로 문구나 표현을 일부 바꾸어 재보도한 경우는 맨 처음 보도된 기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기사는 정신장애나 질환을 주제로 하는 기사가 아닌 경우 (“과

거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으나...”라는 표현이 포함된 기사), 정신장애나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본 기사분석의 초점이 차별적 보도의 성격, 방식, 내용에 있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사는 모두 제외하고 부정적 기사 258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6> 국내 5대 일간지 정신질환 관련기사 보도 현황 (단위: 건)

분기	A사	B사	C사	D사	E사	계
2011년 07월-09월	63	203	55	105	54	480
2011년 10월-12월	73	259	72	95	76	575
2012년 01월-03월	86	232	87	124	64	593
2012년 04월-06월	62	248	90	101	110	611
합계	284	942	304	425	304	2,259

다. 신문기사 내용분석의 틀

1) 차별적 기사내용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김성완 외(2000) 연구에서 실시한 기사분석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 기사의 내용분석”(김성완 외, 2000: 841-842, Table 2)에 사용된 9개 범주를 사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기사별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 범주에 속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범주별로 빈도를 집계하였다. 동일 기사에서 동일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이 한 번 이상 나오는 경우, 1회로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범주별로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대표적 표현을 예시하였다.

분석틀로 사용한 9개 범주에는 원인편견, 난폭하고 위험함, 엉뚱하고 특이함, 부적응, 비하적 표현, 수치와 고립, 격리 필요성,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불치와 부담이 포함된다.

2) 기사에 사용된 차별적 법률용어 파악

정신장애(인)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 차별적, 불명확한 용어가 존재함으로 인해 그러한 용어들이 신문기사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2010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토론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실정법을 보면,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다기하여 그 규범적 의미가 애매하고 또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불분명하다. 물론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와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강희원, 2010).

“각 법률의 관련 조항들에서 ‘심신장애’, ‘신체 또는 정신장애’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고용 단계부터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정신미약자’, ‘정신병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임...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 ‘예측 불가능한 사람’, ‘반드시 감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항임” (곽정숙,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된 용어들에 대해 출현 빈도를 집계하였다. 이 용어에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신이상, 정신병자, 정신미약, 정신박약이 포함되었다.

IV. 연구결과

1.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구결과

가.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시사 교양 프로그램 9 편에 대해 네 그룹의 모니터링 수행자들이 작성한 결과지 35개를 5) 세 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검토하였다. 모니터링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관찰 내용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찰에 대해 편견요소로 인식하게 된 이유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각각의 사례들을 관련이 있는 범주 및 편견차원으로 유목화 하였다. 유목화 과정에서는 모니터링 수행자들의 편견요소 인식 이유를 최대한 반영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견과 다른 범주 및 편견차원으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1) 부정성, (2) 부정확성, (3)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 (4) 편집기법을 통한 편견조장의 네 기준별로 수집된 편견요소 예들을 제시하였다.

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부정성 분석기준 10개 차원은 각각, 위험성/공격성 부각, 예측불가능, 회복불능, 식별가능(비정상성), 가없음(비참함), 무능성, 비사교성, 신뢰못함, 사회의 짐(버림받은 존재), 감금대상으로, 이들 각각의 차원별로 유목화 된 모니터링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공격성 부각

선행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장 일관되게 제시되는 이미지는 위험성과 공격성(폭력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방송을 통해 위험성과 공격성이 부각되는 방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부록

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실제로 일반인 범죄율보다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신장애인 범죄건수만이 제시되거나 정확한 출처나 통계자료의 제시 없이 30%, 50% 등과 같은 수치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활용한 정보전달은 그 정확성 여부를 떠나 시청자에게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의도적인 편파적 구성의 결과로 위험성이 부각될 수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 쓰나미, 악몽, 묻지마 범죄, 시한폭탄, 광란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의 반복적 제시, 폭행 장면의 반복 제시, 사건/사고의 횡수나 정도를 부풀리는 방식, 증상이나 질환과 살인/폭력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표현(예,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져서 살해했다)하는 방식이 보고되었다.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일관된 반복적인 노출이 정신장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접촉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신장애인을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 실제 미디어가 이러한 편견을 형성, 유지, 강화하고 있음을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을 전문적 자문으로 제시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흉악, 흉폭해지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정신질환과 정신병질(psychopath)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 중에서도 구체적인 질환명을 밝히지 않고 정신질환이라는 일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보도내용으로 부정성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관된 위험성/공격성 부각을 통해 시청자는 정신질환자 전반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고 사회방위 차원의 관리, 격리가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공격성 이미지는 상당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방송제작 및 편집의 결과로 초래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방위 목적으로도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는 식의 멘트. (대학원, 학부, 장추련) *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환청과 망상증상이 곧 살인과 폭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대학원) * 약 복용과 관련해, 약의 효능이나 기능, 부작용 등을 언급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몰고 감. (대학원, 학부, 장추련) * “정신질환자들은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 * “보호수감소에 수감된 정신질환자의 30%가 살인죄” (-> 정확한 통계 없이 제시. (대학원, 학부, 장추련) * “정신질환자 범죄 한 해에 2천 건” (-> 일반인 범죄와 비교하지 않은 채 숫자만 강조(대학원, 장추련) * “정신질환자 가운데 가족 살인이 50%” (-> 정확한 근거 없이 제시. 위험성 강조. (대학원) * “(정신질환자가) 미친 듯이 날뛰었다.” (학부-총 2회) * “이상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대학원, 학부) * ‘괴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함. (학부-총 3회)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 장추련) *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 (장추련) * 진료 기록 일부 내용만 부각시켜 보여줌. (장추련) * 인터뷰 도중 취재자가 먼저 “가위로요?”, 또 “낫으로요?” 라고 물으며 무기. 흉악함을 강조. (대학원, 학부) * 경찰이 피의자의 입원, 치료경력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질환명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감. (대학원) * 취재진이 “이상한 것이 없었느냐?”라고 주민들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주민들은 부 자연스러운 이전 행동을 부각해 말함. (장추련) *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평범한 시민의 퇴근길 이, 방과 후 아이들의 하굣길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학원, 장추련) * “점점 더 흉포해지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장추련) 	<p>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p>
---	-----------------------

<p>* 범죄 심리학자와의 인터뷰로 정신질환=범죄로 연상하게 됨. (대학원)</p>	
<p>* 사회자의 멘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계속됐고”지만 직접적 사례 언급 없이 멘트로 피해가 크다는 것을 과장함. (대학원)</p>	<p>컨테이너 감금~</p>
<p>* “평범한 가정에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 (대학원)</p>	<p>불시에~ 공황장애</p>
<p>*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라는 과장된 표현. (대학원, 학부) * “순식간에 엎혀버린 기억회로는....악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학원) * “어떤 불길한 징조” (대학원) * “차에 탄 아이들을 부모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멘트로 긴장감 고조. (대학원) * “~광란의 질주” (학부) * 현지 경찰이라고 알려주며 사람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범죄 의 우려와 연관시킴. (대학원) * 교통사고로 차가 완파되었다는 119 통화내용을 여과 없이 들려주며 위험한 상황을 표현 (-> 아무런 설명 없이 사고 내용만 들려줌. (대학원) *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사례는 한 가지만 언급. (학부)</p>	<p>기억과의 사투</p>
<p>* 노숙을 하는 등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회 상황 혹은 아기 엄마의 어려운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고 산후우울증, 즉 정신질환 증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함. (KAMI) *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져서 살해했다.” (KAMI) * 전문가(의사)는 구체적으로 산후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진행자는 시 작부터 살인 사건은 산후우울증에서 왔다고 표현하며 ‘산후우울증’을 병명으로 확정함. (장추련) * “우울증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러한 행동(살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 의사가우울증=살인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며 경각심을 부각. (장추련)</p>	<p>생후 50일~ 대체 왜?</p>

<p>* “이웃 주민들에게도 기피와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녀” (-> 위협성 과장. (대학원, 장추련)</p> <p>* “피의자는 뭐 자신이 93년부터 정신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가족들 도 (피의자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 공황장애와 폭행의 연관성을 유도한 멘트. (대학원, 장추련)</p> <p>*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부에 정신과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함. (장추련)</p> <p>*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중 “정신병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가해자가 예전 에도 앞 동네 사시는 분의 자녀를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했었어요.” (-> 폭력등을 행사한 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딸인 피해자가 무참하게 당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대사.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는 정신 장애인들이 무조건 한 동네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위협감을 조성. (KAMI)</p> <p>*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중 “아이의 성격이 거칠어졌어요.” (-> 가해자(정신장애)의 공격성이 그대로 아이에게 나타남을 표현함으로써 정신 질환의 전염성을 암암리에 느끼게 해준다. (KAMI)</p> <p>* 아이의 상처를 여과 없이, 반복하여 보여줌. (대학원-총 2회)</p> <p>*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불안감, 위협감 조성. (대학원- 총 2회, 장추련, KAMI)</p>	<p>이유없어! !~</p>
--	---------------------

② 예측 불가능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증상이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폭행, 살인, 느닷없는 위협 등의 갑작스런 결과와 연결 짓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근거리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스트레스가 축적되면서 전조증상이 발달하고 위기 상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관찰된다. 폭행이나 살인,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 상황이 맥락도 없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거나 이를 시한폭탄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위험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 “순간 환청이 들려 폭행했다고 합니다.” (-> 우발적인 증세로 폭행을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음. (대학원)	이유 없어!~
* “산후우울증에 의해 순간적으로” (-> 마치 사회자가 살인자였던 것처럼 본인이 단정하고 있음. (장추련)	생후50 일 대체 왜?
* 취재자가 인터뷰 중,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라고 물으며 누구나 갑자기 그런 위협이 올 수 있다는 느낌을 줌. (대학원)	기억과의 사투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 되어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 장추련)	그들은 왜 흥기를?

③ 회복 불능

정신장애를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혈압과 당뇨 같은 일반 신체건강상의 문제도 “치료”나 “완치”의 개념보다 “관리”와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은 장애에 대한 협소한 시각과 비관적 전망을 강화시킨다.

* “치료가 쉽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부)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 (대상자에게) “애는 못 고쳐요. 내가 다 알아요, 절대 안 나아요.” (대학원, KAMI)	컨테이너 감금~

④ 식별가능성/비정상성

정신장애 일부 유형 중에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눈에 띄는 외모나

독특한 캐릭터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고정화하는 방식의 보도로, 옷을 다 벗은 채로 다닌다, 장기간 씻지 않고, 침을 흘리고, 초점 잃은 눈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낸다,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산다, 짐승 소리를 낸다, 소리 지르며 돌아다닌다 등 비정상적인 행동만을 부각하는 보도 행태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일원이 아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이라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의료적 치료와는 달리 정신과 치료는 비정상적인 행동임을 시사하는 표현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의 반복적 제시를 통해 시청자는 방송에서 보이는 현상을 정신장애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

<p>* “광증이 오면 옷도 다 벗은 채로 여름에 돌아다녀요” (학부, 대학원, 장추련, KAMI)</p>	<p>이유없어! ~</p>
<p>* “컨테이너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판단해 시청자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음. (대학원) *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학부) * “이런 와중에도 남자는 여전히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 그 남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다른 세상에 산다는) 느낌을 주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진행자의 추측성 멘트임. (학부)</p>	<p>컨테이너 감금~</p>
<p>* “무슨 말인지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형설수설 하는 것을” (대학원)</p>	<p>기억과의 사투</p>
<p>* 웅크리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시킴. (대학원) * “이도 빠지고 침도 많이 흘리고, 막대기 들고....” (대학원) * “두 눈은 초점을 잃었고 알 수 없는 소리만 냅니다” (대학원, 학부) * “언제 씻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학부) “ 돌아다니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학부)</p>	<p>컨테이너 감금~</p>

* “엘리베이터 안에 오줌 싸고 욕을 하고., 짐승소리를 내고” (대학원, 학부)	그들은 왜 흥기를 ?
* “먹고 자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10년 쯤 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 마치 인간이 아닌 동물, 식충이 같다는 느낌을 주는 대사. (학부)	컨테이너 감금~
* “ <u>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u> 받았다는..” (-> 정신과 치료의 비정상성을 강조함. (대학원, 장추련)	주병진도 ~ 혹시 나도?

⑤ 가없음/비참함

정신장애의 증상은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증상이 있더라도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환자복, 쇠창살, 지저분한 환경, 강제 이발 등의 장면이 비춰지면서 특정(가없고 비참)한 모습만 부각되므로 콘텐츠의 균형적 제시가 필요하다.

* 환자복을 입고 병실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 병원에 감금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으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존재, 즉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에 심어줄 수 있다. (대학원, 학부)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 정신감호소를 쇠창살 뒤로 보여주는 등 쇠창살 안에 환자들을 자주 보여줌. (->정신질환자는 쇠창살 안에 가둬야 한다는 이미지 조성. (대학원-총 5회, 학부-총 3회, 장추련-총 3회)	그들은 왜 흥기를?
* 지저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인공의 모습. (대학원-총 7회, 학부-총 6회, 장추련-1회) * 강제로 이발시키는 장면. (장추련)	컨테이너 감금~

⑥ 무능성

정신장애인이 생산적, 독립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데에는 증상이나 사회기술부족과 같은 개인적 역량의 부족 보다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원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직업재활과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 방송을 통해 그려진 정신장애인의 이미지는 일상의 성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무능성 보도는 정신장애인이 질병 혹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보다, 이들이 이러한 무능성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격리해야할 존재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증상 악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성 상태가 일반적인 양상인 듯이 기술함으로써, 무능성을 강조한다.

<p>* “(가족이 없으면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 가족이 돌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편견 조장. (대학원, 학부) * 사후관리 부실의 원인을 ‘본인동의’로 제시. (-> 정신질환자는 자기 결정력이 없으므로 격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멘트로 편견 조장. (대학원)</p>	<p>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p>
<p>* “어디 보낼 수는 없어 금방 가서 적응 못 하고 죽어” (학부)</p>	<p>컨테이너 감금~</p>
<p>* “(공황장애 환자는)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 장추련)</p>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⑦ 비사교성

정신질환 증상을 고정된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묘사는 고립과 격리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p>* “애는 상태가 원래 이래서 (사람들과) 부대끼면 더 안 좋아요” (->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처우와 치료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대학원)</p>	<p>컨테이너 감금~</p>
---	---------------------

⑧ 신뢰 못함

뇌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상황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환자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p>* “아기로 인해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던지, 아기 엄마로서 의 마음가짐이 안 된 상태였죠.” (-> 경찰의 추측성 인터뷰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기 살해의 원인인 듯 설명함 (학부, 장추련, KAMI)</p>	<p>생후 50일~ 대체 왜?</p>
---	------------------------------

⑨ 사회의 짐/버림받은 존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결여되었을 때, 질병이나 무능은 가족과 사회의 짐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성원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족 모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p>* “죽기만을 바래요” (대학원)</p>	<p>컨테이너 감금~</p>
<p>*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이 사람(정신 장애인)으로 인해 생활이 곤</p>	<p>이유없어!</p>

<p>란하고 매우 피곤하다고 하는 내용. (장추련) * “병원에서 치료 안 해준다고 하면 이제 갈 데도 없고”라는 당사자 멘트 (-> 병원치료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대학원))</p>	<p>그들은 왜 흥기를?</p>
---	-------------------

⑩ 감금/배제해야 할 대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반 시청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어렵다. 입원관리를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정착에 협력자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의 입원을 감금으로 표현하는 행태는 치료에 필요한 경우라도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하여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

<p>* “잘못되면 정신병원에 가두면 되지” (-> 정신질환자는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료가 아니라 가두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함. (학부, 대학원, 장추련, KAMI) * “이미 가해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감금된 상태” (-> ‘감금’이라는 단어는 감옥에 쓰이는 용어와 동일, 정신병원은 강제로 가두고 감금시키는 곳이라는 강력한 편견을 심음. (KAMI)</p>	<p>이유없어! ~</p>
<p>*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을 통해 관리해야 된다.” (-> 정신질환자들은 모두 입원시켜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장추련) * 정신감호소를 쇠창살 뒤로 보여주는 등 쇠창살 안에 환자들을 자주 보여줌. (->정신질환자는 쇠철창 안에 가둬야 한다는 이미지 조성. (대학원-총 5회, 학부-총 3회, 장추련-총 3회)</p>	<p>그들은 왜 흥기를 ~?</p>
<p>* 환자복을 입고 병실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 병원에 감금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으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존재, 즉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대학원, 학부)</p>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모니터 활동 분석을 통한 부정성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 했던 9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부정성 분석기준 10 개 차원 모두에 대해 부정성을 부각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 되어 부정성의 표현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위험성/공격성 이미지에 대한 부각은 다양한 부정성 차원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져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된 특정 이미지는 별다른 의식적 노력 없이 시청자에게 견고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다는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는데(Kamalipou 등, 200; Ramasubramanian, 2007), 이는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임이 확인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미디어를 통해 제시된 상당수의 부정성 사례들은 실제 객관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편향된 제작과 편집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감소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 개선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부정확성 분석기준 차원은 문헌연구를 통해 ① 부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과 ②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치 판단적, 추론적 표현을 함으로써 편향된 시각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니터링 수행 결과, ③ 근거 없는 통계결과를 빈번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상을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다수 지적되어 이를 별도의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례를 포함하였다. 이들 세 차원별로 유목화 된 모니터링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

정신질환은 질병특성과 치료방법에 대한 일반의 지식이 많지 않은 현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증상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방법보다는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종교적인 의례 등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 치료 지연이 이루어져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이다.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가 아닌 가족이나 주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질병 및 치료관련 정보가 제시될 때 이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안내나 해설이 제시되지 않아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p>* 방송 내내 정신과라고 언급하다가 뒤편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표현됨으로써 혼동을 줌. (KAMI) * “어깨통증의 원인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대학원)</p>	<p>이유없이 썰시고 결린다면</p>
<p>* 최면 치료를 통해 기억상실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 (->이 방법이 해결책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당사자가 최면 치료 도중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취재를 위해 끝까지 시도하는 것은 제작의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생각됨. (학부) * “최면이 기억을 회복시켜준다” (대학원) 6)</p>	<p>기억과의 사투</p>
<p>* 피의자의 공황장애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생긴 것이라는 멘트. (대학원)</p>	<p>이유없어!</p>
<p>* 약을 챙겨야 터널을 통과가능하다면서, 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보이는 ‘활명수’같은 병에 든 약을 보여줌. (대학원) * “운전자가 약을 먼저 챙기고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에서 이 약 이 일시적 안정제인지 정신과처방 약인지 애매하게 표현됨. (KAMI)</p>	<p>불시에~ 공황장애</p>
<p>* “우황청심환을 달고 삽니다.” (-> 우황청심환이 공황장애 약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대학원, KAMI) * “(증상이 심해질 때는) 약을 더 많이 먹죠.” (-> 여과 없이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복용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음. (KAMI)</p>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p>* “소리까지 환청이 들리고 귀 이명이 더 커져서 소리가 증폭이 돼서 들려요” (-> 공황장애도 환청이 들린다는 것은 매우 새로운 내용이므로 보충멘트가 곁들여져야 함. (KAMI)7)</p> <p>* “제 문제예요, 제 안의 두려움, 염려의 문제들이 그렇게 표출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너무 외부하고 차단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등의 당사자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결국 문제 해결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KAMI-총 2회)</p>	
--	--

② 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가치 판단적, 편향된 의견이나 추론적 표현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성격상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제작자나 출연자의 의견이나 판단이 보태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견은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이 수행된 9개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진행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입증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을 하거나 가치 판단적 진술을 하며, 혹은 제작 의도나 방향에 맞추어 편향된 성격을 띠는 추론을 하면서 이에 대해 단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고나 범죄사건 등의 발생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원인이나 가해자 특성에 대한 다각적 상황 정보들이 생략되고 정신과 치료 경력만 보도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편향성 양상임이 제시되었다.

<p>* “만만한 문제가 아니군요.” (-> 계속 빨리 병원에 가면 가벼운 문제라는 논조로 일관하면서 큰 문제라는 식의 진행자 멘트는 부적합. (KAMI)</p> <p>* “이웃 주민들에게도 기피와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녀” (-> 위험성 과장. (대학원, 장추련)</p>	<p>이유없이 썰시고 결린다면</p>
---	------------------------------

- 6) 이러한 치료 방법을 일반화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방송진행 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제시되어야 함(정신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
- 7) 공황장애에서는 환청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청과 이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말한 멘트를 그대로 방송하고 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옴(정신과전문의 자문 결과).

<p>*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아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 우울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어둡게 조장하고 있음. (대학원))</p>	<p>주병진도 ~ 혹시 나도?</p>
<p>“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걱정됩니다.” (-> 정신질환자가 생명을 경시한다는 듯한 사회자의 멘트. (학부, 장추련, KAMI))</p>	<p>생후 50일 ~ 대체 왜?</p>
<p>*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라는 과장된 표현. (대학원, 학부) * “순식간에 잊혀버린 기억회로는....악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학원) * “어떤 불길한 징조“ (대학원) * “차에 탄 아이들을 부모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멘트로 긴장감 고조. (대학원) * “~광란의 질주” (학부)</p>	<p>기억과의 사투</p>
<p>* “평범한 가정에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 (대학원)</p>	<p>불시에 공황장애</p>
<p>* 사회자의 멘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계속됐고”지만 직접적 사례 언급 없이 멘트로 피해가 크다는 것을 과장함. (대학원)</p>	<p>컨테이너 감금~</p>
<p>*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평범한 시민의 퇴근길 이, 방과 후 아이들의 하굣길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학원, 장추련) * “점점 더 흉포해지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장추련)</p>	<p>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p>
<p>* “피의자는 뭐 자신이 93년부터 정신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가족들 도 (피의자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 공황장애와 폭행의 연관성을 유도한 멘트. (대학원, 장추련) *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부에 정신과치료라는 표현을 사용 함. (장추련))</p>	<p>이유없어! ~</p>

③ **정확한 근거의 제시 없는 통계 보고 : 과장**

일반적으로 통계 보고를 통한 정보전달은 객관성, 신뢰성, 정확성을 가진 정보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근거의 부재나 부족,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통계 보고가 지적되었다. 정신질환 역학 조사는 조사 시기, 발생률인가 혹은 유병률인가, 조사에 포함된 질환유형이 무엇인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그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정보나 출처의 소개 없이 제작 방향에 들어맞는 수치만을 전달할 경우 이는 과장이나 왜곡된 보고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p>*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통계치와 정확한 병명 제시 없음. (대학원, KAMI) * “작년 한해 정신질환을 앓은 환자는 5년 전에 비해 23%나 증가했습니다.” (-> 정확한 통계치와 정확한 병명 제시 없음. (대학원, KAMI)</p>	<p>불시에~ 공황장애</p>
<p>* “공황장애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만 명을 넘었고, 환자가 50만 명을 넘을 것이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통계자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음. (대학원) * “지난 5년 새 공황장애 환자가 50% 급증했습니다.” (-> 정확한 근거 * “환자 상당수가 엉뚱한 병원을 전전하다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원) * “26명 가운데 7명이 기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 26명이라는 적은 수로 일반화시킴. (대학원) *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중에 15% 정도만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상담서비스 를 받고 있습니다.” (-> 근거 제시 및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며, 특정 병명 대신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로 통합해 사용. (대학원, 학부)</p>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p>* ‘우울증 척도 TEST’ (-> 10명이 대상이고 어떤 척도인지 명확하지 않음.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위험성 과장. (대학원), 부정확성. (장추련)</p>	<p>이유없이</p>

<p>* “특히 4.50대의 70%가 이 병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데요.” (->몸의 통증을 느낀 사람의 수치인데, 통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는 수치인 듯 확실하게 밝히지 않음. 의도적 편향보도. (학부, 장추련)</p>	<p>썩시고 결린다면 ?</p>
<p>*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산후우울증” (->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반화시킴으로써 불안감 유도. (대학원) *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산모 85%가 우울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 통계의 근거를 말하지 않았으며 우울감이 산후우울증으로 연결되고 대다수의 산모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과장함. (대학원, 장추련)⁸⁾</p>	<p>생후 50일~ 대체 왜?</p>
<p>* 출연자 10명을 대상으로 질문, 손을 들게 한 뒤 그것을 토대로 “10명 중 5명은 가벼운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하는데요.”라고 적은 수의 확률을 일반화 함. (대학원)</p>	<p>주병진도 ~ 혹시 나도?</p>

부정확성에 대한 모니터 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이는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전달의 부정확성, 진행자의 편향된 의견제시나 추론적 표현, 혹은 근거제시 없는 혹은 과장된 통계 보고의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치료적 접근방법 선택이나 치료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사실 보도와 객관적 시각이 견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진행자 의견의 편파성이나 추론, 과장된 혹은 왜곡된 통계 보고는 시청자의 관점이 부정확한 사실이나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두고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다.

3)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문헌연구를 통해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에 대한 매체의 문제점이 제기

8)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은 아주 다른 병이며, 산후우울감은 출산 후 가벼운 우울감으로 50~80%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나,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 전후에서 나타나는 보다 심각한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음(정신과 전문의 자문 결과).

된 것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내용분석에서 지적된 현상으로, 본 연구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러한 용어의 출현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이나 이웃이 사용한 분명한 경멸적/비하적 언어 사용 혹은 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망신당할 만한 일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방관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행자의 해설이나 자막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 “치과보험에 가입하려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 ‘망신’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그 사례를 진짜 ‘망신’으로 치부함. (학부)</p>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p>* “점점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가 되더라고요.” (대학원, 학부) * (감금이유에 대해) “지랄해가지고” (대학원) * “어느 날 갑자기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남자” (-> 환자의 심각한 상황을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속된 말로 표현함. (대학원))</p>	<p>컨테이너 감금~</p>
<p>* ‘정신병자’라는 단어 사용. (학부) * ‘~(맛이) 간 사람’ (학부)</p>	<p>그들은 왜 흥기를~?</p>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에 대한 모니터 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분석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나 출연자 등을 통해 사용된 부적절한 언어에 대한 적절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편견 조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은 ① 음악과 음향, ② 조명과 배경화면, ③ 자막, ④ 카메라 앵글, ⑤ 의도적으로 과도한

공포 장면이나 연관성 적은 영상이나 장면 삽입, ⑥ 불필요한/부적절한 내연, ⑦ 모자이크의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들 각 차원별로 유목화 된 모니터링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음악과 음향

위험성이나 폭력성을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빠른 템포의 타악기 소리 등과 같은 긴장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됨으로써, 내용 전달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9개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두에서 이러한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음악의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음산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느리고 웅장한 음악, 자극적 기계음의 사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점 커지는 심장소리, 가빠지는 숨소리, 사이렌 소리, 짹짹이는 시계소리 등과 같은 음향은 ‘죽음의 공포’로 표현된 공황장애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계속 이어짐. (대학원) * 빠른 템포의 타악기 음악사용. (대학원) *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의 빈번한 사용. (10여 분간 7회- 학부) 	불시~ 공황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의 짹짹거리는 효과음. (대학원) *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음이 낮은 음악으로 불안감을 줌. (대학원) * 타악기의 빠른 음악으로 불안감과 긴장감 조성. (학부-총 17회, 장추련- 2회) * 날카로운 기계음으로 공포감 조성. (학부) *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줌. (KAMI) * 과도한 배경음악으로 대사가 혼동됨. (-> 오히려 정신을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기까지 함. (KAMI) 	기억과의 사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감을 주는 빠른 템포의 타악기 사용. (대학원, 학부생 각각 4회) * 점점 커지는 심장소리. (대학원-총2회) * 가빠지는 숨소리. (대학원) * 날카로운 피아노 선율의 반복. (대학원) * 사이렌 소리로 불안감 조성. (학부) * 마치 폭풍전야같이 음산한 느낌의 음악으로 불안감 조성. (장추련)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을 자극하는 음산한 음악사용. (대학원-1회, 학부- 17회) * 타악기 소리로 음습한 분위기와 긴장감 조성. (장추련) 	<p>그들은 왜 흥기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 (학부) * 우울한 피아노 연주. (학부) * 불안감을 조성하는 빠른 템포의 음악. (학부) 	<p>컨테이너 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 울음소리로 불안감 유도. (대학원, 학부) * 느리고 웅장한 음악으로 공포감 조성. (대학원, 학부, 장추련) * 불안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빠른 템포의 음악. (대학원, 학부-3회, 장추련-3회) * 전자음악으로 긴장감 고조. (장추련-총 2회, KAMI-1회) 	<p>생후 50일~ 대체 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템포의 불안감을 주는 음악사용. (학부-총 3회) 	<p>주병진도 혹시~ 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 사용으로 불안감 조성. (학부-총 6회, 장추련-1회) * 반복되는 저음 사용이 두려움 조성. (학부-총 2회) * 자극적인 기계음 사용으로 긴장감 조성. (장추련-총 4회) 	<p>이유없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사용하여 불안감 조성. (대학원, 학부) * 담담하고 편안한 진행자의 멘트 분위기와는 달리 불안감을 조성. (KAMI) 	<p>이유없이 쑤시고~ ?</p>

② 조명과 배경화면

붉은색이나 파란 색 등과 같은 원색의 배경화면이나 번개 치듯 번쩍이는 조명을 통해 장애의 이미지를 자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달되는 내용의 부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화면을 붉은색으로 처리해 공포감 조성. (대학원- 2회) * 새파란 색 배경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함. (학부) * 어두운 공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므로써 공포감 조성. (대학원 -총 3회, 학부-2회, 장추련-1회) 	<p>기억과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이 붉은 화면으로 변함. (-> 공포감 조성. (대학원, 학부- 각각 2회) * 공황장애를 표현하는 이미지와 색깔이 너무 강렬함. (장추련) * 번개 치듯 번쩍이는 조명. (대학원)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화면을 붉게 처리하여 공포감 조성. (학부) 	<p>그들은 왜 흥기를~ ?</p>

③ 자막

자막의 사용에 있어서 ‘죽음의 공포’, ‘무차별 폭행’, ‘길거리 시한폭탄’ ‘기억과의 사투’ ‘얼굴이 다 내려앉고 콧대도 무너지고’ 등과 같이 위험성을 부각하거나 잔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자막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점도 지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인터뷰 내용 중 ‘약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내용을 과장하는 자막의 사용도 지적되었는데, 상당수의 자막이 위험성/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공포’라는 자막을 붉은색으로 표기. (학부, 장추련) * 출연자는 ‘호흡이 약간 곤란해지죠.’ 말했지만, 자막으로는 ‘호흡이 곤란해지죠’라고 나옴. (대학원) *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라는 자막의 사용. (대학원, 학부) 	<p>불시~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병진도 피해갈 수 없다! 주부 우울증 혹시 나도?’라는 제목을 검정배경에 자막을 써, 자막을 부각시킴. (-> 연예인이 걸리면 나도 걸린다는 연관성 없는 자막을 색깔대비로 부각시켜 보여줌. (학부) 	<p>주병진도 ~ 혹시 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없어!” 남의 자식 무차별 폭행한 학부모-라는 제목을 붉은색 표기. (학부) * ‘말리는 선생님까지 폭행한 학부모’에서 ‘폭행한 학부모’ 붉은색으로 표기. (학부) *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붉은색으로 표기. (학부) 	<p>이유없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과의 사투’라는 제목이 죽음과의 연관성을 암시. (대학원) * 사고당사자의 인터뷰를 부분편집하고 나머지는 자막으로 처리. (대학원) * 기억 상실된 사람을 ‘Amnesia mystery man’이라고 표현. (대학원) 	<p>기억과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공포’ 라는 자막 사용. (대학원, 학부)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 (-> 흥기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해 위험성 부각. (대학원) * ‘길거리 시한폭탄’이라는 자막 사용으로 위험성 부각. (대학원, 장추련) * 인터뷰 중 ‘동거남 살해’, ‘남편살인미수’ 등의 불필요한 설명을 자막으로 고시해 줌. (대학원, 장추련) * ‘얼굴이 다 내려앉고 콧대도 무너지고’를 자막 처리하여 잔혹성 강조. (대학원) 	<p>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p>

④ 카메라 앵글

빠르게 회전하거나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혹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영상이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등과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화면, 파손된 차량이나 전봇대, 흉기(낫), 깨진 유리창 등과 같은 사고영상의 반복 제시, 잔혹한 영상의 여과 없는 제시 등 카메라 앵글도 위험성을 극대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앵글을 빠르게 회전하며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대학원, 장추련, 학부) 	<p>불시에~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제자리에서 빠르게 빙글빙글 돌며 회전. (대학원-총2회, 학부생 총 4회) * 주변부분 뿌옇게 처리. (대학원) * 흔들리는 카메라 구성. (대학원-총 2회) * 빙글빙글 회전하는 카메라, 주변이 뿌옇게 되는 화면 구성. (대학원) * 뿌옇게 처리되는 주변화면, 빙빙 도는 화면 구성. 불안감 조장. (대학원-총 2회) * 빨리 들어가는 듯한 빠른 화면 전환과 눈을 뜨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줌으로 써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 (대학원-총 3회, 학부-총 2회) * 터널에서 차가 빨리 지나가는 장면과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는 듯한 현상을 보이는 기법을 통해 두려움 조장. (대학원, 학부 각각 총2회) * 사고 영상의 반복 제시. (대학원-총 5회) * 어두운 화면. (대학원-총 2회, 학부-총 5회) * 신호등의 불이 계속 바뀌는 안정적이지 않은 화면을 보여줌. (대학원) * 차량이 파손된 모습과 부서진 전봇대의 사진을 확대해 보여줌. (대학원, 학부) * 빠르게 편집된 화면. (대학원) * 위화감이 드는 화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줌. (대학원) *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영상으로 공포심 조성. (학부-총 4회) 	<p>기억과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가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뇌 기능에 의한 문제임을 부각시킴. (대학원-총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함. (대학원)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에서 쫓기는 듯한 카메라 앵글. (대학원-총 2회, 학부생-1회, 장추련-1회) * 가파른 경사를 떨어지는 듯한 각도로 촬영. (대학원, 학부) * 쓰러진 자전거, 깨진 유리창을 클로즈업 함. (대학원, 학부, 장추련-각각 1회) * 잔혹한 CCTV 영상을 그대로 보여줌. (대학원) * 바닥과 초인종에 묻은 피를 보여줌. (대학원, 학부) * 낮(흥기)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여줌. (대학원-총 2회, 학부-총 2회) *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학부-총 6회) * 주변을 어둡게 연출해 두려움을 강조. (학부-총 2회, 장추련 -1회) 	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자, 수술대, 가위 등을 보여주며 위험성 강조. (대학원, 학부) * 구급차가 흔들리는 장면. (학부) * 흔들리는 거리. (장추련) 	생후 50일~ 대체 왜?

⑤ 의도적 영상 삽입: 과도한 공포장면이나 연관성 없는 장면

흥기를 휘두르는 검은 그림자나 실루엣, 균열된 얼굴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구급차, 수술대, 영정사진이나 시신 운송장면, 유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나 고통스러워하는 관련 없는 사람, 둔기 살해 사건, 몽크의 '절규' 그림 삽입 등 사건이나 내용 혹은 맥락과 연관성이 없는 장면이 삽입되었는데, 이들은 공포감, 위험성을 과장 혹은 강조하는 일관된 특징을 갖는 장면들로, 특정한 방향성을 의도한 영상 삽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면우울증을 설명하는 장면을 가면과 그림자로 표현. (->섬뜩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줌.(대학원, 학부, KAMI) * 방송내용과 관계없는 장면 삽입으로 웃음을 유발시키며 희화화함. (대학원) * 제목과 자막은 ‘50대 주부 이유 없이 쭈시고 아픈 이유?’인데 영상에 나오는 주부 는 39세(대학원, 학부)와 49세 임. (대학원,KAMI) 	<p>이유없이 쭈시고 걸린다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은 실루엣. (장추련) * 배경 그림이 괴물처럼 이미지화하여 공포감, 불쾌감 조성. (장추련) * 여자 얼굴의 균열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과장되어 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림을 보고 자신으로 이 병에 걸릴 것 같은 위협감이 느껴짐. (KAMI) *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배경. (학부) * 괴로워하는 모습, 지저분한 집, 유서 등의 화면을 보여줌. (대학원) * 유서화면. (장추련) 	<p>불시에~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화면 속에 서 있는 남녀, 뒤에서 따르는 또 다른 여성의 형상. (대학원) 	<p>컨테이너 감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곳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의 형상. (대학원) * 사람영상 위에 뇌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공포감 조성. (학부) * 당사자의 피부질환 약 노출(->사건 내용과 개연성이 없고, 타 질환 노출. (학부) * 관련 없는 사건 장면-구급차에 사람이 실리는 장면-을 보여줌. (학부) * 외국사례를 삽입해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보편화시킴. (대학원, KAMI) * 사건과 관련 없는 사고영상들을 흑백 처리하여 마치 기억에 의한 일인 것처럼 보 이게 하며 빠르게 계속 보여줌. (대학원) 	<p>기억과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부림치는 남자의 실루엣. (대학원) * 그림자의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학부) * 남자주인공이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드라마 장면 삽입. (대학원) * 강의실에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남학생. (-> 재연도 아니고 사실과도 당사자도 아님. (대학원) * 몽크의 '질규' 그림을 사용하여 공포감 조성. (대학원, 학부) *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거친 느낌의 연필 삽화를 보여줌. (대학원생) * 인과 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아이. (대학원) *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자. (대학원-총2회)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기를 휘두르는 그림자. (대학원, 학부) * 검은 그림자의 실루엣. (장추련) * 흥기를 검은 그림자로 표현함. (장추련) * 내용과 관계없이 방황하는 청소년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장애가 마치 비행청소년과 같이 미성숙하고 예측불가하며, 위험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조성. (대학원) * 보호소에 수감된 사람(당사자가 아님)들의 이야기를 자막으로 처리해 보여줌으로써 심각성을 강조. (대학원, 학부) * 이 사건과 관계없는 또 다른 사건-둔기로 살해한 사건-을 첨가하여 위험성을 조장함. (학부) 	<p>그들은 왜 흥기를 들었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앰블런스가 달리고, 중환자실의 문이 닫히며 수술대 불이 켜지는 영상. (대학원-총 2회, 학부, 장추련-1회) * 경찰이 수색 후 시체를 구급차에 태우는 영상. (대학원) * 사건과 관계없는 살인사건의 화면 삽입. (장추련) * 사건과 관계없이 영정사진을 보여주며 공포심 조성. (장추련) * 어두운 배경에 아기 인형을 내 던지는 장면(대학원-총3회, 학부-3회, 장추련-총 2회, KAMI-1회) 	<p>생후 50일~ 대체 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치 떨어질 준비를 하는 듯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실루엣. (대학원, 학부, 장추련) * 자살한 연예인들의 영정사진을 이어서 보여주면서 우울증=자살로 이어지는 듯 공포심을 줌. (대학원, 장추련) 	<p>주병진도 ~혹시 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상처를 여과 없이, 반복하여 보여줌. (대학원-총 2회) *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불안감, 위협감 조성. (대학원- 총 2회, 장추련, KAMI) 	<p>이유없어 !</p>
---	-------------------

⑥ 불필요한 혹은 부적절한 재연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서 재연임을 명시하지 않고 재연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재연이 활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학부) * 재연자의 모습이 혐오적/위협적 모습으로 재연됨. (대학원) * 재연 시 검은 배경 사용. (학부) 	<p>불시에~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대학원-총3회, 학부-총 15회, 장추련-1회) * 연기하는 남성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불안한, 두려움에 떠는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 (대학원) * 재연자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모습 -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암시. (대학원) 	<p>기억과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대학원) 	<p>죽음의 공포 공황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대학원, 학부, 장추련-각각 총 2회) 	<p>그들은 왜 흥기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대학원) 	<p>컨테이너 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연 명시 없음. (대학원, 학부-총 2회) * 재연장면을 흑백화면으로 처리해 공포심을 줌. (장추련) 	<p>생후 50일 ~ 대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화면에 죄명을 적는 장면을 마치 재연처럼 연출함. (학부) 	<p>이유없어! ~</p>

⑦ 모자이크 처리

정신장애인과 비정신장애인의 인터뷰 시 모자이크 처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이 스티그마가 적지 않은 질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당사자이든 주변인이든 해당인의 허락 없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정신장애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특징 일색인 점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이나 주변인이 자신의 얼굴과 질병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은 미디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 동네 주민들의 모습 등이 지나치게 모자이크 처리됨. (-> 정신장애인과 한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함. (KAMI-총 2회)</p>	<p>이유없어! ~</p>
<p>*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 * 이와 반면, “남편한테 화나면 두드려요”라고 말하는 일반인 인터뷰 시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 줌. (KAMI-총 2회)</p>	<p>이유없이 썩시고 결린다면 ?</p>

영상 미디어 편집 기법의 활용이 전달되는 프로그램 내용과 일치하고 또 이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 편집 기법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성을(특히 위험성/공격성의 강조) 부각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대다수의 편집기법이 일관되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신질환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과 같은 픽션과 달리 객관성, 공정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내세우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내용의

특정 방향성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편집기법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직접 관련 없는 장면의 삽입기법까지 동원하는 등 다소 주관적이며 편향된 방식으로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뉴스 모니터링 결과

뉴스 29 편에 대해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여 각 사례들을 관련 있는 범주 및 편견 차원으로 유목화한 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례의 유목화 결과와 일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주요 범주에서는 유사하였다. 부정성, 부정확성, 편집기법 통한 편견 조장의 세 가지로 유형으로 묶일 수 있는 항목이 보고되었고, 경멸적/비하적 언어사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나 뉴스 기사별 다시보기의 제목에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보고되어 뉴스 모니터링 결과는 1) 부정성, 2) 부정확성, 3) 다시보기 제목, 4) 편집기법의 네 기준으로 유목화 되었으며, 각 기준별 수집된 편견요소 예들을 하위차원 별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1) 부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출된 부정성 차원 10개 기준 중 뉴스 모니터링 활동에서 확인된 사례는 ‘위험성/공격성 부각’에 집중되어 있었고, ‘배제해야 할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한 개 있었으며, 다른 여덟 가지 차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뉴스 보도의 정신장애 관련 기사가 주로 범죄 사건이나 사고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① 위험성/공격성 부각

뉴스 보도에서는 주로 살인·폭행 등과 같은 범행 사건을 보도할 때 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임을 전제하거나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성/공격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 사건에서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도 유독 ‘정신병력 조사계획’만이 진행자의 보도 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있거나,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나 어려운 환경적 상황 중에서도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병력만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될 때, 더욱이 이러한 보도 행태가 상당수의 사건사고 때마다 반복될 때, 위험성/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정화된다.

<p>* 정신질환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묻지마 범행’으로 이어지면 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해결책 제시가 아닌 정신질환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있다는 멘트를 마지막에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행’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노숙자 역시 정신장애인일 것으로 경찰 은 보고 있습니다. (-> 정확한 근거 없이 유추하여 정신장애인의 행위라고 판단, 방송을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정신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의 주범이라는 위협성을 부각시킴.)</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 대책 마련 시급.</p>
<p>*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숨진 지 6시간 만에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점과, 엄마가 우울증을 앓았고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 에 주목하고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 정확한 조사와 근거 없이 우울증이 영아 살해의 원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11020 9개월 영아 의문사 아기 부모 의혹 부인</p>
<p>*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확한 근거 없이 우울증을 살해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20121. 일어나 보니 아내와 자녀 3명 숨진 채</p>

<p>*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권 씨는 "남편 몰래 빗을 많이 저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아이들을 살해한 원인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멘트 사용. 권 씨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수식어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뤄진 범죄가 우울증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p>	<p>MBC. 뉴스데스크. 120310. 생활고 비관 40대 남 두 딸 살해 후 도주</p>
<p>* 묻지마 범죄의 피해 사건을 보도한 뒤 앞뒤 개연성 없게 “정신 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도 여전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묻지마 범죄는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몰고 감.</p>	<p>KBS1. 뉴스 9. 111107. 길거리 공포, ‘묻지마’ 범죄</p>
<p>*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 할머니 살해의 원인을 정신 병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KBS1. 뉴스9. 111125. 찾김에...분노 범죄, 폐지 줍는 할머니를</p>
<p>* 경찰은 이 씨의 정신병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인질극 범행을 정신장애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KBS2.아침뉴스타임. 120112 대낮 백화점 임신부 상대 인질극 ‘묻지마’범행</p>
<p>* 산후우울증 때문에 8개월 된 딸을 때리고 굶겨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산후우울증이 영아살해의 원인이 된다는 선입견을 갖게 해 주는 멘트 사용.)</p>	<p>KBS2.아침뉴스타임. 120320 모성 버리는 병 ‘산후 우울증’</p>

② 감금/배제해야 할 대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통해 사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뉴스에서 아직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의 예방법으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p>* 현역 부적합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성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대 내 문화 개선에 힘쓰는 방식이 아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부적</p>	<p>MBC. 뉴스데스크. 110705. 해병대 총기 사건, 기수 열외 때문에</p>
---	---

<p>합자로 가려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p>	
<p>* “정신질환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묻지마 범행’으로 이어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는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배제시켜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멘트임.)</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정신장애인이 범행을 저지르면 치료감호소나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감호소나 병원에서 나온 뒤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는 감호소나 병원에서 나온 뒤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현재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어떤’ 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 시켜 끝까지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줌.)</p>	<p>MBC. 뉴스데스크. 110930.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p>*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돌발 행동으로 위협을 느낀 주민들 이 장애인을 이사 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이해가 되죠. (-> 이사 나가게 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을 일반화 함.)</p>	<p>KBS2. 아침뉴스타임. 110923.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진실은?</p>
<p>* 입구는 철문에 쇠창살까지 2중으로 보안이 돼 있었지만, 철문이 열린 사이 쇠창살문까지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 철문, 쇠창살(영상=멘트)로, 마치 이들이 배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비춰짐.) * 한 사람은 지구대 가서 보호요청하고 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부 탁하고), 가족들은 다 피신하고, 부모부터 가족까지...그 걱정이란 것은 당해보지 않은 당사자는 모르겠 죠. (-> 가족도 기피하는 존재, 배제해야하는 존재로 인식됨.)</p>	<p>KBS2. 아침뉴스타임. 111013. 정신병원 환자 3명 집단 탈주, 살해 ‘위협’</p>

2) 부정확성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부정확성에 대한 뉴스의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발견되었던 부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의 가치 판단적, 편향된 의견이나 추론적 표현이 상당한 정도로 발견되었으며, 정확한 근거의 제시 없는 통계 보고로 인한 과장도 지적되었다.

① 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가치 판단적, 편향된 의견이나 추론적 표현

뉴스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판단적, 편향된 의견이나 추론적 표현은 진행자 자신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찰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후자의 경우 방송 진행자의 역할이 타인에 의해 표현된 추론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보도 프로그램의 주관적 추론이나 편향성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발생한 대다수의 사건에서 일부 출처의 의견만을 일관되게 소개하는 방식의 보도 역시 진행자가 직접 편향된 의견이나 추론적 표현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는 보도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묻지마식 범죄나 살해, 영아 살해나 유기 등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나 범행의 동기나 정황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정신질환 여부를 최우선으로 의심하거나 혹은 다른 가능한 요인에 대한 추론은 배제하고 정신질환만을 가능한 범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론은 사건 발생의 초기 보도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론은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들에 대해 밝혀진 다양한 원인 중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사건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야 논리적 설명력을 얻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체 범죄의 70% (주취상태 포함 시 약 99%)는 일반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정신장애인 범죄는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1). 따라서 범

최 동기나 정황 추론과정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낮은 가능성을 가진 요인부터 의심해보는 모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사건 발생 초기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의 보도 행태는 대다수 범죄에 항상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정확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산후우울증 때문에 8개월 된 딸을 때리고 굶겨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표현은 전형적인 부정확성에 근거한 왜곡보도의 하나로, 산후우울증 조기치료를 독려하는 표면적 의도와 달리 산후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치료의 장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p>* 현역 부적합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성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해병대 총기 사건의 원인이 사건 당사자가 밝힌 진술(기수열외) 때문에 아니라 정신질환인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멘트. 정신질환이 위험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조장.)</p>	<p>MBC. 뉴스데스크. 110705 해병대 총기 사건, 기수 열외 때문에</p>
<p>* 전문가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산후 우울증에서 비롯된 정신 장애가 겹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결론이 아닌 전문가들, 그것도 어떤 전문가들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문성을 내세워 추측성 멘트를 함.)</p>	<p>MBC. 뉴스데스크. 110819 갓난아이 4명 버린 ‘비정한 엄마’ 30대 여성 입건</p>
<p>*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어디서, 누구에 의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앵커의 판단을 일반화 시켜 이야기 함.)</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노숙자 역시 정신장애인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경찰은 정확한 진단과 근거 없이 유추하여 정신장애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의 주범이라는 편견을 갖게 함.)</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 대책 마련 시급.</p>

<p>*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숨진 지 6시간 만에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점과, 엄마가 우울증을 앓았고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근거 없이 우울증이 영아 살해의 원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11020 9개월 영아 의문사 아기부모 의혹부인.</p>
<p>* 경찰은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정확한 근거 없이 사고의 원인을 정신장애로 추정하도록 하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20111 백화점서 임신부 인질극 이 땅에 천국 세우려?</p>
<p>*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확한 근거 없이 우울증이 살해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20121 일어나 보니 이내와 자녀 3명 숨진 채.</p>
<p>*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권 씨는 ‘남편 몰래 빗을 많이 쳐 아이들 과 함께 죽으려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아이들을 살해한 원인이 생활고가 아닌 우울증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20310 생활고 비관 40대 남 두 딸 살해 후 도주.</p>
<p>* 경찰조사결과 이 학교 전기·정보공학부 1학년인 하 씨는 평소 우울 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자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MBC. 뉴스데스크. 120521. 서울대학교 기숙사 옥상서 학생 ‘투신자살’.</p>
<p>* 올해 안에 전체로 보면(정신이상자 범죄자 수가) 2000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자료 제시.)</p>	<p>KBS1. 뉴스 9. 111107 길거리 공포, ‘묻지마 범죄’</p>

<p>*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의 원인을 정신 병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KBS1. 뉴스9. 111125 “찾김에..”.분노 범죄, 폐지 좁는 할머니를.</p>
<p>*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는데 운전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었던 걸 까요? (-> 어떤 증세를 보였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추측성 멘트를 함.)</p> <p>* 이상한 행동을 좀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서 수사과장 인터뷰) (-> 아직 수사 중이며, 정신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치 운전기사가 정신이상인 것처럼 기사를 몰고 감.)</p> <p>*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마약이나 음주반응 등이 나오지 않았고, 지 난 2010년에는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정신질환자이며, 그로인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의 보도는 객관성이 떨어짐은 물론 사실 자체가 왜곡된 것 임.)⁹⁾</p>	<p>KBS1. 뉴스9. 120120 버스 운전기사 '정신이상'... 광란의 질주 '아찔'</p>
<p>* 정신장애를 앓는 남성이 이웃주민과 폭행시비가 일자 아파트 주민 들이 단체 행동을 벌인 건데요. (-> 글의 주어와 누앙스 상,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의미로 비취지며, 중립적 위치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판단한 멘트 임.)</p>	<p>KBS2. 아침뉴스타임. 110923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진실은?</p>
<p>* 경찰은 이 씨의 정신병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범행을 정신장애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 경찰은 일단 정신분열에 따른 '묻지마식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범행을 정신장애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멘트 사용.)</p>	<p>KBS2. 아침뉴스타임. 120112 대넷 백화점 임신부 상대 인질극 '묻지마'범행.</p>
<p>* 산후우울증 때문에 8개월 된 딸을 때리고 굶겨 결국 숨지는 안타 가까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한 엄마가 돼 버리는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취재했습니다.</p>	<p>KBS2. 아침뉴스타임. 120320 모성 버리는 병 '산후 우울증'</p>

<p>* 이 엄마는 아이를 3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요. 그녀는 평소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다고 합니다. (-> 영아살해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살해의 원인이 된다는 선입견을 갖게 해주는 멘트 사용)</p>	
--	--

② **정확한 근거의 제시 없는 통계 보고 : 과장**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뉴스에서도 정신질환의 역학 조사 결과 중 보도의 방향에 들어맞는 통계 수치만을 자료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거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대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식의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의 위험성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p>* 묻지마 범죄는 재작년 기준 8천 6백 건, 4년 만에 두 배나 급증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작 범죄 수치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 수치가 아닌 전체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즉 전체 범죄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인양 과장시키고 있다.)</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p>
<p>*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4만여 명이지만, 실제 환자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40만 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10배라가 넘을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한, 누구에 의한 분석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p>	<p>MBC. 뉴스데스크. 120109 ‘공황장애 앓고 있다’..혹시 나도?</p>
<p>* 성인 6명 중 1명 ‘정신질환’..... 더욱 큰 문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대다수가 치료를 기피한다는 겁니다.</p>	<p>MBC. 뉴스데스크. 120215</p>

9) 경미한 정신질환 및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신질환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임(정신과 전문의 자문 결과).

<p>(->정확한 통계나 근거 제시 없이 통계적 수치와 ‘대다수’라는 표현을 함.)</p>	<p>성인 6명중 1명 '정신질환'.. 병원 치료는 기피.</p>
<p>* 어릴 때 정신적 충격, 성인 우울증 위험 10배 ↑(자막) (->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막으로 처리.)</p>	<p>MBC. 뉴스데스크. 120604 어릴 적 학대 등 정신적 충격 우울증으로 발전 '위험'</p>
<p>* 다음은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정신이상자의 수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800명 수준이었지만, 올 해는 8월 현재 벌써 1500명을 넘었습니다. (-> 묻지마 범죄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 뒤 마치 그것이 정신이상자들 에 의한 범죄인양 정신이상자 범죄자의 수를 제시. 그것도 %가 아닌 수치로 제시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처럼 과장하는 등 부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음.)</p>	<p>KBS1. 뉴스9. 111107 길거리 공포, '묻지마' 범죄</p>
<p>* 공황장애 체크리스트를 제시(6가지 항목)하면서 이 가 운데 4개 이상 해당되면 공황장애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함. 하지만 이 리스트의 출처 및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 음.</p>	<p>SBS. 8시 뉴스. 120325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p>

3) '뉴스 다시보기' 제목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뉴스를 통해 전달된 기사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어 실제 뉴스기사 전체를 다시 보지 않고 뉴스의 제목만으로도 기사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시보기를 위한 뉴스의 기사별 제목은 해당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뉴스 31개에 대한 뉴스 다시보기의 기사별 제목의 상당수에서 선정적, 자극적인 언어사용이 발견되어 이러한 기사 제목만으로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뉴스 다시보기 제목의 예로, ‘칼부림’, ‘광란의 질주’ “살해 위협” ‘모성 버리는 병’ 등 대다수가 위험성/공격성을 부각하는 자극적 언어가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뉴스 다시보기 제목 목록만으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공격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뉴스 다시보기 기사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하는 주제어의 기능을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뉴스가 전달하려는 주요 내용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공격성 인식 강조임을 시사해준다.

*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시급	MBC. 뉴스데스크. 110929.
*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 ...대책 마련 심각	MBC. 뉴스데스크. 110930.
* 정신이상 증세 고속버스 기사 ‘광란의 질주’	MBC. 뉴스데스크. 120120.
* 버스 운전기사 ‘정신 이상’... 광란의 질주 ‘아찔’	KBS1. 뉴스9. 120120.
* 정신병원 환자 3명 집단 탈주, 살해 ‘위협’	KBS2.아침뉴스타임 .111013.
* 모성 버리는 병 ‘산후 우울증’	KBS2.아침뉴스타임 . 120320.
*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	SBS. 8시뉴스. 120325

4)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을 통한 편견 조장 모니터링 활동 분석 결과

뉴스는 그 특성상 보도 시간이 짧고 진행자의 언어적 보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8 가지의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이 모두 동원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앵커와 리포터가 내용을 소개할 때 보도할 내용과 함께 제시되는 자막과 배경화면, 자료화면으로 CCTV 영상의 반복 제시, 그리고

과도한 공포장면의 삽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음악과 음향

뉴스의 경우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달리 위험성 등 특정한 이미지가 뚜렷하게 연상될 수 있는 음악이나 음향의 사용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이나, 일부에서 긴장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음악과 음향의 사용이 보고되었다. 더욱이 수류탄 터지는 소리나 기적소리의 경우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음도 아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효과음으로 기사 보도의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수류탄 터지는 소리 (-> 관련 없는 음향으로 공포심 조)	MBC. 뉴스데스크. 110705 해병대 총기 사전, '기수 열외' 때문에
* 영상에 타악기의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삽입함으로써 긴장감과 위험성을 부각시킴.	KBS2. 아침뉴스타임. 110923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 진실은?
*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면서 빵! 소리를 냄. (-> 불필요한 음향으로 놀람은 물론 공포심 조성)	SBS. 8시 뉴스. 120325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

② 조명과 배경화면

뉴스의 진행 중 보도 내용과 함께 제시되는 조명이나 배경화면은 해당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보도 내용에서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은 아니나, 사건의 전체 맥락

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조명이나 배경화면에서 반영될 때, 이는 정신질환을 각종 폭력이나 살인사건의 필연적 배경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내용 중에서 특히 폭력성이나 위험성 부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명이나 배경화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해병대 인성검사 결과 가운데, ‘불안.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이 확인되었다는 문구가 편집돼 등장. (-> 피의자가 주장하는 기수열외 문제가 아닌 피의자 본인의 정신적 문제로 사건을 몰아감.)</p>	<p>MBC. 뉴스데스크. 110705 해병대 총기 사건, 기수 열외 때문에</p>
<p>* 피가 터지는 장면(붉은색)이 배경화면으로 처리됨.</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몽둥이를 들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을 후려치는 사람의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사용됨으로써 폭력성 부각. * 뛰어가는 일반 시민들을 편집해 마치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 하게 제시.</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p>* 괴로워하는 사람 형상의 검은 실루엣을 배경으로 제시.</p>	<p>MBC. 뉴스데스크. 120215 성인 6명중 1명 ‘정신질환’ 병원 치료는 기피</p>
<p>*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편집 기법으로 위험성을 높임.</p>	<p>KBS2. 아침뉴스타임. 120405 정신질환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져</p>

<p>*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과 수류탄이 터지는 장면이 CG 처리돼 배경화면에 나타남.</p>	<p>MBC. 뉴스데스크. 110705 해병대 총기 사전, '기수 열외' 때문에</p>
--	--

③ 자막

뉴스에서 자막의 주사용 목적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 '칼부림', '광란의 질주' '모성도 없는 산후우울증'과 용어가 주요 자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뉴스 제작팀이 보도 내용의 사실적 언어적 전달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p>*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라는 자막이 크게 부각됨.</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죄'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파출소 코앞 '칼부림'이라는 자막</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p>* '광란 질주 공포의 2시간', '동서울 출발 직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자막으로 내보냄. (-> 버스 운전자가 정신 질환자인지 정확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신이상이라고 확정하고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p>	<p>MBC. 뉴스데스크. 120120 정신이상 증세 고속버스 기사 '광란의 질주'</p>
<p>* 화면의 오른쪽 위편에 <모성도 없다 '산후우울증'>이라는 제목을 보도시간 내내 붙여 둠.</p>	<p>KBS2.아침뉴스타임 .120320 모성 버리는 병 '산후 우울증'</p>

④ 카메라 앵글

모니터링 대상 전체 뉴스에서 카메라 앵글이 특정한 제작 의도를 반영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객관성을 추구하는 뉴스에서도 위험성과 폭력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서 이러한 부정성의 전달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 앵글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빠르게 쫓아가는 카메라, 흔들리는 영상 (-> 불안감 조성)</p>	<p>MBC. 뉴스데스크. 110929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p>
<p>* 화면을 빠르게 Zoon In 시킴으로써 긴장감 조성.</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⑤ 불필요한 혹은 부적절한 재연/자료화면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이 뉴스 보도 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재연이 상당수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재연의 양상이 일관되게 부정적 측면을 과장 혹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질환 관련 뉴스보도가 공정성, 정확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대다수의 재연에서 '재연' 표시가 없었으며, 재연이 기사 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보다는 불안, 공포, 위험성, 폭력성 등을 과장, 부각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p>* 어두운 베란다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불안한 듯 손을 만 지작거리는 모습이 불필요하게 재연되었으며 '재연' 표시</p>	<p>MBC. 뉴스데스크. 110921</p>
--	-------------------------------

<p>없었음.</p>	<p>장애인 쫓아낸 이웃 '징역형'. 각서까지 받아내</p>
<p>*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재연하면서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았음.</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p>* 급하게 운전하는 모습+수술대에 실려 가는 모습을 자료화면 으로 처리. 하지만 '자료화면' 표시 없음.</p>	<p>MBC. 뉴스데스크. 111020 9개월 영아 의문사 아기 부모 의혹 부인</p>
<p>* 칼(흉기)을 그대로 노출시킴.</p>	<p>MBC. 뉴스데스크,. 120111 백화점서 임신부 인질극 이 땅에 천국 세우려?</p>
<p>* 멍든 팔, 뜯긴 머리, 맞은 눈 등 학대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킴. * 아이가 맞는 장면을 재연하였으나 '재연' 표시 없음. * 어두운 베란다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 /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불필요하게 재연되었으며 '재연' 표시가 없음 (-> 110921 뉴스에서 지적된 장면과 동일한 장면. 같은 자료화면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p>	<p>MBC. 뉴스데스크. 120604 어릴 적 학대 등 정신적 충격 우울증으로 발전 '위협'</p>
<p>* 문을 두드리고 난리치는 모습을 재연' 표시 없이 재연함.</p>	<p>KBS2.아침뉴스타임 110923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 진실은?</p>

<p>* 아이 학대 장면과 물건 던지는 장면 등을 ‘재연’ 표시 없음.</p>	<p>KBS2.아침뉴스타임 120320 모성 버리는 병 ‘산후우울증’</p>
<p>* 복도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 / 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 (-> ‘재연’ 표시 없음)</p>	<p>KBS2. 아침뉴스타임. 120405 정신질환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져</p>
<p>* 발걸음, 걸어가는 뒷모습. (-> ‘재연’ 표시 없음)</p>	<p>SBS. 8시 뉴스. 120116 ‘마음이 아파요’ 청소년 정신건강. 현 주소는</p>
<p>* 혼자 쓸쓸히 그네 타고, 걸어가는 남자. (-> ‘재연’ 표시 없음)</p>	<p>SBS. 8시 뉴스. 120215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울증 크게 늘어</p>

⑥ 의도적 영상 삽입

‘비정한 엄마’ ‘모성 버리는 병’ 등과 같이 뉴스의 제목으로서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사용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일회적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산후우울증의 전형적인 특성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일 사건의 화면을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빈번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을 수집한 출처가 인터넷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하는 등 일견 과학적, 객관적인 보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자료를 근거로 ‘영아 유기, 살해’라는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산후우울증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끔찍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뉴스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들은 이야기를 마치 목격하듯 목격자 인터뷰로 제시하거나, 관련 없는 영상을 짜깁기 편집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삽입하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삽입된 영상들의 내용이 일관되게 위험성, 폭력성, 비정상성 등 부정적인 성격을 보임으로써 영상 삽입이 특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의도적 영상 삽입은 뉴스 보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정확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p>* 여성이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이 담긴 CCTV 화면을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이미 정신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유추하여 사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p>	<p>MBC. 뉴스데스크. 110819 갓난아기 4명 버린 '비정한 엄마' 30대 여성 입건</p>
<p>* “군대 가서 애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라고” (주민 인터뷰) (-> 들은 이야기를 마치 목격하듯 목격자 인터뷰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료 삽입.)</p>	<p>MBC. 뉴스데스크. 110930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시급</p>
<p>* 피해자의 맞은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정신이상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CCTV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묻지마 범죄 =정신이상자 소행’ 식으로 인식하게 함.</p>	<p>KBS1. 뉴스9. 111107 길거리 공포 ‘묻지마 범죄’</p>
<p>* 묻지마 범죄 사건보도와 심각성에 대해 나온 뒤, ‘정신과 전 문의’의 인터뷰가 이어짐. (-> 마치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p>	<p>KBS1. 뉴스9. 111125 “찾김에...” 분노 범죄, 폐지 좁는 할머니를....</p>
<p>* 주민이 몰려온 과거 상황에 대해 관련 없는 영상을 짜깁기 하여 편집해 마치 사실처럼 표현. * 목격자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본인의 목격담이 아닌 들은 내용을 진술, 목격자 취지에 맞지 않은 자료화면임.</p>	<p>KBS2.아침뉴스타임. 110923 장애인 가족에 이사 강요...진실은?</p>

<p>* 산후우울증 범죄에 관한 관련 기사와 인터넷 글을 짜깁기 편집하여 제시하며 심각성 강조.</p> <p>*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산후우울증 사례들을 화면으로 내보내고, '영아 유기, 살해' 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보여줌.(->산후우울증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질병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p>	<p>KBS2.아침뉴스타임. 120320 모성 버리는 병 '산후우울증'</p>
<p>* 영화 '도가니' 장면 삽입.</p>	<p>SBS. 8시 뉴스. 111226 '공포의 기억' 지울 수 있다 치료 길 열려</p>
<p>* 이경규, 김장훈 등 연예인의 모습을 편집해 삽입.</p>	<p>SBS. 8시 뉴스. 120215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울증 크게 늘어</p>
<p>* 드라마 장면 삽입.</p>	<p>SBS. 8시 뉴스. 120325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p>

⑦ 모자이크 처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화면상에 그대로 제시되는 것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과 같은 여타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얼굴이 노출된 보도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부정성이 부각되는 내용의 기사가 전달 될 때, 화면 노출이 당사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p>*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는 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됨.</p>	<p>KBS2.아침뉴스타임 . 120405 정신질환 방지하면 자살로 이어져</p>
---	---

2. 신문보도 연구결과

가. 정신질환 관련 부정적 기사의 비율

지난 1년간 국내 5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7개 관련 검색어(우울증, 정신이상, 정신질환, 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정신장애)로 검색된 기사는 총 2,259건 이었다. 검색된 전체 기사 중 “부정적 기사”, 즉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보도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258건이었으며, 전체 관련기사(2,259건) 대비 부정적 기사(258건)는 평균 11.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사 258건의 신문사별 분포를 살펴보면, B사가 12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D사 48건(%), A사 36건(%), C사가 35건(%)이었으며, E사가 가장 낮은 17건(%)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신문사별 편집방향 및 보도성향에 기인할 수 있으나, 지면수가 보도의 분량과 깊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면수가 많은 신문사의 경우 상세기사 및 후속기사의 보도로 인해 기사의 절대 건수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신문사별로 관련 기사 대비 부정적 기사의 비율은 A, B, C, D 신문사 모두 11%~13% 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E신문사는 5.6%로 다른 신문사의 절반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검색된 E신문사 기사의 주제가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교육, 홍보에 관한 기사이거나 아예 관련성이 적은 기사로 분류되어 분석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인데, 어떤 과정이나 기전에 의해 다른 신문사들과 차별적인 보도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표4-1> 관련기사 대비 부정적 기사 비율 (단위: 건)

신문사	A사	B사	C사	D사	E사	합계
관련 기사	284	942	304	425	304	2,259
부정적 기사	36	122	35	48	17	258
관련기사 대비 부정적 기사(%)	12.7%	13.0%	11.5%	11.3%	5.6%	11.4%

나. 검색어별 부정적 기사 분포

검색어 중 검색결과가 가장 많았던 용어는 ‘우울증’(45.9%)이었으며, 이어서 ‘정신질환’(15.7%), ‘정신병’(10.9%), ‘정신분열’(10.4%)이었고, ‘정신장애’, ‘정신이상’, ‘조울증’도 각각 3%~6%를 차지했다. 최다 결과를 산출한 검색어인 ‘우울증’으로 검색된 기사의 비율은 신문사별로 편차가 매우 컸는데, 적게는 30.6%(A사), 34.3%(C사)에서 많게는 70.6%(E사)까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분류된 기사는 절대 편수에 있어서는 가장 많았으나, 교육용이나 영화나 책 등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정보전달 목적이 많았다.

<표4-2> 검색어 별,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 검색비율 (N=258)

신문사	A		B		C		D		E		합계	
	건	백분율	건	백분율								
우울증	11	30.6	63	51.6	12	34.3	26	54.2	12	70.6	124	48.1
정신질환	4	11.1	23	18.9	7	20	11	22.9	0	0	45	17.4
정신병	3	8.3	11	9	8	22.9	5	10.4	0	0	27	10.5

정신분열	8	22.2	6	4.9	4	11.4	1	2.1	3	17.6	22	8.5
정신장애	5	13.9	4	3.3	1	2.9	1	2.1	2	11.8	13	5.0
정신이상	3	8.3	11	9	3	8.6	3	6.3	0	0	20	7.8
조울증	2	5.6	4	3.3	0	0	1	2.1	0	0	7	2.7
계	36	100.0	122	100.0	35	100.0	48	100.0	17	100.0	258	100.0

다. 부정적 기사의 내용분석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부정적 기사 258건에 대해 김성완 외(2000)에서 실시한 부정적 기사 내용분석의 범주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내용분석에 사용한 범주는 원인편견, 난폭위험, 엉뚱특이, 부적응, 수치고립, 비하표현, 격리필요성, 만성질병, 입원부정으로 총 9개 범주이다.

부정적 기사 258건의 내용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내용 1, 2순위는 원인편견(126건, 48.8%)과 난폭위험(110건, 41.1%)이었으며, 이어서 엉뚱특이(23건, 8.9%), 부적응(21건, 8.1%), 비하표현(16건, 6.2%), 수치·소외(12건, 4.7%), 격리필요성(12건, 4.7%),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8건, 3.1%), 불치·부담(1건, 0.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기사의 주제로 난폭위험(51.8%)이 가장 높고, 비하표현(15.4%), 엉뚱특이(11.8%), 원인편견(7.9%), 부적응(7.9%),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7.9%), 불치·부담(7.0%), 수치(6.0%), 격리필요성(2.6%)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10년여의 간격을 두고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원인편견은 10여 년 전 4위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 1위를 차

지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당사자의 문제 행동을 정신적 문제로 기술하는 기사가 많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격리필요성은 9위였으나 7위로 상승했으며 기사 비율도 약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와 관련하여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난폭위험, 비하적 표현,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불치·부담을 포함하는 기사의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전문적 치료에 대한 홍보 등이 활발해 지면서 보도 자료의 부정적 내용과 표현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쉽게 변하지 않는 정신질환 및 관련 특성들, 예를 들어, 엉뚱특이, 부적응, 수치·소의 등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부정적 기사의 내용분석 (N=258)

주제	본 연구			김성완 외(2000)		
	건	백분율(%)	순위	건	백분율(%)	순위
원인편견	126	48.8	1	18	7.9	4
난폭위험	106	41.1	2	118	51.8	1
엉뚱특이	23	8.9	3	27	11.8	3
부적응	21	8.1	4	18	7.9	4
비하표현	16	6.2	5	35	15.4	2
수치고립	12	4.7	6	14	6.1	8
격리수용	12	4.7	7	6	2.6	9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8	3.1	8	18	7.9	4
불치부담	1	0.4	9	16	7.0	7
계	325	126.0	-	270	118.4	-

라. 부정적 기사의 범주별 내용분석

1) 원인 편견

원인편견을 담은 기사는 정신질환의 발병원인과 사건사고의 귀인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부정적 기사 258건 중 원인 편견이 드러난 기사는 126건(48.8%)으로 특정 사건이나 범행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또는 우울증, 조울증)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충기난사는 정신장애다’ 등이 직접적 귀인에 해당하며, ‘평소 우울증(또는 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과거에 병원치료를 받았다’ 등이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지각하게 하는 간접적 귀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촉발된 사건사고에는 행위자 개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됨에도 개인적 차원에 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십여 년 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와 관계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발병원인을 언급하면서 유전병이나 귀신들림과 같은 초자연적 원인에 주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의 원인이 생물, 심리, 사회적 차원의 다원론적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의 경우 부정적 기사에서 발병원인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진단명이나 정신질환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이 김성완 외(2000)와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뉴스, 시사, 다큐, 교양,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대중에 친숙해 지면서 이에 따라 기사에서도 진단명 사용이 더욱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병 원인은 정

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전문적 지식을 대중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 기사에 등장하지 않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2) 난폭하고 위험함

난폭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분석대상 기사 중 106건(41.1%)으로, 난폭함과 위험함을 시사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흥기를 휘두른’, ‘부러뜨린’, ‘난사해’, ‘죽이겠다 협박’, ‘칼로 자르고’, ‘암매장’, ‘토막 내’, ‘목 졸라’, ‘머리채를 붙잡고’, ‘둔기를 꺼내’ 등이 포함된다.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난폭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51.8%를 차지했으나 지난 10여년 사이 그러한 내용이 10% 가량 감소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엉뚱하고 특이함

특정 사건이나 범행의 당사자가 엉뚱하고 특이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총 23건(8.9%)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묘사하는 문구에는 ‘수백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오바마 비방낙서’, ‘비비탄을 직원에게 쏘며’, ‘옷통을 벗고 바지를 내렸다’, ‘인분을 딸 입에 넣었다’,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가스통을 짚어지고 전동차에 탄’, ‘울다가 웃다가’, ‘맨 쌀밥을 잔뜩 먹은 듯’ 등이 포함되었다. 정신질환자가 엉뚱하고 특이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는 11.8% 이었으며 지난 10년 사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엉뚱하고 특이한 점이 쉽게 변하지 않는 정신질환(분열병)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부적응

보도된 기사의 주인공이 일상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태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총 21건(8.1%)이었다. 일상적, 사회적 역기능을 표현하는 문구로 ‘관심병사’, ‘대학-군-결혼생활에 적응을 못했다’, ‘5년 내 사표’, ‘적응장애, 녀 달째 칩거’, ‘혼인관계 파탄 책임’, ‘정신질환이 있다며 조기전역’, ‘네 번째 결혼생활에 중지부를 찍음’, ‘극심한 우울증이 삶 전체를 뒤덮었다’, ‘집안은 쓰레기로 뒤덮였고 딸은 방치됐다’ 등이 사용되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부적응을 보인다는 기사의 비율은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했는데, 이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 비하적 표현

특정 사건이나 기사 주인공의 극단적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총 16건(6.2%)이었다. 여기에는 ‘완전 병신’, ‘정신병자는 커녕’, ‘정신이상자로 몰아붙이거나’, ‘정신병자라고 놀렸다’, ‘환각상태에 빠진 정신병자들이야’, ‘완전 정신병자잖아’, ‘정신분열 댄스’,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된다’ 등의 표현이나 문구가 사용되었다.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현상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정신병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15.4%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난 10여년 사이 특정 현상이나 행동을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문기사에서 선정정보도 금지 원칙에 따

른 언어 선택과 사용이 요구되는 현실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수치와 고립

정신질환에 걸리면 수치스러워 숨기고 사회적으로 소외, 고립된다는 내용의 기사는 총 12건(4.7%) 이었다. 수치스러움과 낙인찍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는 ‘집안의 수치’, ‘숨겨야 할 비밀’, ‘내가 왜 정신과에 가야 해?’, ‘정신병으로 낙인찍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나 고립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숙함’, ‘정신장애인이며 성폭행을 당함’ 등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김성완 외(2000)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6.1%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7) 격리 필요성

정신질환자는 격리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총 12건(4.7%)로, ‘탈주’, ‘인계’, ‘수감’, ‘무조건 격리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완 외(2000)에 나타난 결과(2.6%)와 비교할 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최근 연달아 발생했던 강력 사건들이 정신질환과 연관 지어져 보도되는 과정에서 공공의 보호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방위적 관점이 기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8)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정신과 입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기사는 총 8건(3.1%)이었으며, ‘탈주’, ‘침대에 묶어’, ‘수감’, ‘정신병원이 급했다-경악을 금치 못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십여 년 전 김성완 외(2000)의 연구에서 7.9%였

던 결과와 비교할 때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9) 불치와 부담

정신질환은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며 가족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내용의 기사는 1건(0.4%)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불치의 정신질환’, ‘100% 없어지진 않는다’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김성완 외(2000)의 연구결과에서 불치 내지 부담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7.0% 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지난 10년 사이에 불치와 부담의 내용이 이전의 5.7%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마.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의 내용 비교

이러한 결과를 신문사별로 살펴볼 때, A사의 경우 다른 신문사들과 달리 원인편견은 거의 없었으나(1건, %), 난폭위험(23건, %)과 부적응(8건, %) 범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C사와 E사의 경우 원인편견과 난폭위험이 1, 2위인 점은 유사했으나 추가적으로 비하적 표현이 각각 8건(%)과 5건(%)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사에 부정적 범주가 한 가지 이상 포함된 비율을 살펴보면, D사가 152.1%, C사가 134.3%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신문사는 110% 대로 나타났다. 즉, C사나 D사의 경우 단일 기사에 부정적 범주가 평균 1.3~1.5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문기사에 나타난 부정적 범주 및 구성 비율을 살펴보는 것과 병행하여 부정적 범주를 포함하는 기사의 절대 건수를 파악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 내용에 대한 반복 노출이 편견의 발생과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정적 내용의 빈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B사와 E사의 경우 원인편견이 각각 42.8%와

35.0%로 최다 출현주제 1위를 차지했으나 실제 기사건수는 62건과 7건으로 B사의 기사가 E사의 기사에 9배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5개 신문가 가운데 지난 1년간 정신질환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했고(942건, 41.7%), 관련기사 대비 부정적 기사 비율이 가장 높으며(122건, 13.0%), 전체 부정적 기사의 소속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122건, 47.3%) B사의 보도 행태에 대한 주의와 환기가 요구된다.

<표4-4> 신문사별 부정적 기사의 내용 비교 (N=258)

신문사 범주	A		B		C		D		E	
	건	백분율	건	백분율	건	백분율	건	백분율	건	백분율
원인편견	1	2.8%	62	50.8	20	57.1	36	75.0	7	41.2
난폭위협	23	63.9	48	39.3	11	31.4	21	43.8	3	17.6
영동특이	3	8.3	12	9.8	2	5.7	6	12.5	0	0.0
부적응	8	22.2	6	4.9	2	5.7	2	4.2	3	17.6
비난비하	2	5.6	2	1.6	8	22.9	3	6.3	1	5.9
수치소외	1	2.8	3	2.5	1	2.9	2	4.2	5	29.4
격리수용	1	2.8	7	5.7	2	5.7	2	4.2	0	0.0
입원에 대한 부정적 기술	0	0.0	5	4.1	1	2.9	1	2.1	1	5.9
불치부담	1	2.8	0	0.0	0	0.0	0	0.0	0	0.0
소계	40	111.1%	145	118.9%	47	134.3%	73	152.1%	20	117.6%

바. 동일사건의 추가 보도

분석 대상 기사 258건 가운데 동일 내용에 대해 제목과 본문의 표현

일부를 바꾸어 반복 보도한 경우는 총 15건으로 모두 51차례 보도되었는데, 이는 기사당 평균 3.4회에 해당한다. 기사 내용은 정신질환자가 난폭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이 9건에 20차례,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지목하는 경우가 5건에 27차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1건에 4차례, 엉뚱하고 특이하다는 내용이 1건에 4차례 보도 되었다. 이러한 반복 보도 행태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B사가 10건에 40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D사가 2건에 5차례, A, C, E사가 각 1건에 2차례씩이었다.

<표4-5> 부정적 기사의 반복 보도 행태

신문사	기사	보도횟수	내용
A	친누나 살해 암매장한 정신분열 40대 구속	2	난폭위험
B	美 우울증 엄마, 7개월 아들 건물 4층서 던져	2	원인편견
	텔런트 한채원 자택서 목매 숨져... 뒤늦게 알려져	6	원인편견
	원로배우 김추련, 우울증 투병 자살	5	원인편견
	현진영 “아내 오서운이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충격고백	4	격리수용
	총기난사 아프간미군, 4번째 전장 파병	2	난폭위험
	‘사랑아 사랑아’ 정아을, 자택서 목매 ‘자살’	11	원인편견
	송대관 차에 소주병 던진 스토키 체포 “정신이상자 소행”	2	난폭위험
	법정에 선 노르웨이 살인마, 나치식 경례	4	엉뚱특이 난폭위험
	광주시청서 공무원 흥기 피습	2	난폭위험
	강남 백화점에서 ‘묻지마 인질극’	2	난폭위험

C	국제일반 “노르웨이 총기난사 주범 브레이비크는 정신 이상”	2	난폭위험
D	‘사랑아 사랑아’출연 정아율,12일 충격 자살	3	원인편견
	‘묻지마 어린이 폭행’뒤 50대男 자살	2	난폭위험
E	정신분열 진단 김 상병 “죽이고 싶다” 메모	2	난폭위험
계	15건	51	

사. 신문기사에 사용된 법률용어

정신장애(인)와 관련된 현행 법률¹⁰⁾에 차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가 존치함으로 인해 그러한 용어들이 신문기사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문제 제기된 용어들을 중심으로 분석대상 기사 258건에서 이들 용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사에서 이들 용어가 사용된 기사는 총 8건으로, ‘심신미약’이 6건, ‘정신병자’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정신과 진단명이 일반인에게 친숙해지고 적절한 표현에 관한 의식이 증가하면서 위 용어들 대신 ‘정신질환’, ‘정신장애’, ‘정신과질환’, ‘우울증’ 등의 명칭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문기사 작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라는 차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제7조의 ②), 인권보호의 차원과 전문용어 변천에 따른 문구 수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요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10) 민법 제9조(심신박약자),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감사원법 제8조(심신쇠약),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주세법 제10조(심신박약자) 등. 그 외 건설기계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의 구 법조문.

<표4-6> 신문기사의 차별적 법률용어 사용 현황 (N=258)

신문사 \ 용어	A	B	C	D	E	계
심신미약	1	3	1	0	1	6
심신상실	0	0	0	0	0	0
정신병자	1	1	0	0	0	2
정신미약	0	0	0	0	0	0
정신박약	0	0	0	0	0	0
소계	2	4	1	0	1	8

V. 매뉴얼 제시

본 연구는 텔레비전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뉴스 및 신문보도를 포함하는 대중매체의 정신장애인 편견 형성/유지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편견 반차별적 방송 및 보도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보도에 대한 연구를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이에 각 연구에 바탕을 두고 매뉴얼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 하는 텔레비전 방송 매뉴얼

방송 매뉴얼 도출을 위해 우선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영상 미디어의 정신장애인 편견조장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미디어 모니터링 수행에 기초가 되는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에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 매뉴얼 제안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상파 세 방송사의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조장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발췌하여 종합·요약하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송 매뉴얼의 조항별 정신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가. 방송 언어표현에 대한 매뉴얼

지상파 세 방송국에서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언어 표현에 대해 제시한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언어 표현>

KBS	MBC	SBS
<p>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작자는 의식의 저변에 대한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p>	<p>어떤 프로그램도 시청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2. 적정한 표현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중략) 또한 잔혹하거나 비참한 것을 표현할 때에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언어표현과 관련된 방송 3사 매뉴얼을 종합해보면, 차별적 표현의 금지, 오도할 가능성 있는 방법 사용의 금지와 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방향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의 경우, 진행자가 직접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이 정신장애인을 비하 혹은 경멸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표현한 경우, 생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¹¹⁾ 해당 내용을 삭제나 재촬영을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인터뷰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표현과 내용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시청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행자가 보도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뉴스의 경우에는 방송 중 언어사용 뿐 아니라, ‘뉴스다시보기’ 제목의 상당수에서 선정적, 자극적인 언어표현을 통해(예; 묻지마 범죄 만연, 모성 버리는 병 산후우울증,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 혹은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보

11) 생방송일 경우, 신속한 자막처리로 이를 정정 보도해야 한다.

도된 사건과 같은 유형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빈번한 것도 아니며, 해당 정신질환의 전형적인 양상이 보도된 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방식의 기사제목은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과장 왜곡하여 시청자를 오도하는 대표적인 언어표현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 언어표현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 한다.

<방송 언어표현을 위한 매뉴얼>

1. 방송 진행자는 물론이고, 취재원이 사용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경멸적/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도 자막 등의 사용을 통해 바로 잡아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2. 방송 진행자는 물론이고, 취재원에 의해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 전달될 경우에도 자막 등의 사용을 통해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뉴스 다시보기 기사 제목에서 정신질환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언어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취재와 기사 / 원고 작성의 매뉴얼

지상파 세 방송국에서 취재와 기사 및 원고 작성에 대한 매뉴얼로 제시한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원칙: 취재와 기사 및 원고 작성 과정>

KBS	<p>9. 사실 의견 진실</p> <p>보도 프로그램과 사실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작자, 출연자의 의견이나 판단이 보태지기도 한다. 특히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의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심층 취재나 분석 논평 기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기자나 앵커의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p> <p>사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자의 의견 개입이 훨씬 용이하다. 단정적으로 말해, 사실 프로그램에서 제작자의 의견이나 관점은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현실 세계에서 얻은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것(연출) 자체가 제작자의 개입과정이고 또 그것이 방송제작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양심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p>
MBC	<p>가. 정확성</p> <p>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제나 소재를 막론하고 취재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 취재 제작진은 제보나 향간의 소문,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방송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는 그 제보자 혹은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방송해야 한다.</p> <p>나. 공정성</p> <p>(중략)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취재 제작진의 당초 기획 의도와 실제 취재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취재를 할 때 당초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해 방송에 반영하고 기획 의도에 반하는 취재 내용을 외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찬반양론이 있을 경우, 취재 제작진은 대립되는 양측의 주장을 단순히 열거하는데 그치지보다는 각 측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재하고</p>

	<p>전달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p> <p>다. 다양성 (중략) 어떤 사회현상이나 갈등 문제 등을 다룰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경우 가급적 다양한 사회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소개한다. 또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존재할 때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취재해 알려야 하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p> <p>라. 사회적 책임 취재 제작진은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정적 효과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p> <p>기사나 원고는 취재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추측이나 의견, 판단은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도 삼가야 한다.</p>
<p>SBS</p>	<p>1) 진실보도 방송프로그램 특히 보도, 정보프로그램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견을 나타낼 경우에는 의견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도, 정보프로그램의 취재, 제작과정은 제작자의 주관적 판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자의적인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원칙은 중시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p> <p>2) 공정성 방송제작에 있어 공정성은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송에서 공정성의 실천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앵글의 선택에서부터 영상의 편집, 출연자의 선정에서 편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와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된다. (중략)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항상 관찰자의</p>

입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권력 집단에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현장에 있어서도 늘 냉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범인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건 보도에 ‘정신 장애인의 소행인 듯’과 같이 보도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방송 3사의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원칙은 취재와 기사나 원고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종합해보면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실제 취재 및 기사/원고 작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정확성은 ① 제보나 소문 등 전달시 사실관계 왜곡이나 과장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 확인 뒤에 방송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범인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건 보도에 ‘정신 장애인의 소행인 듯’과 같이 보도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객관성은 ① 제작자의 자의적 주관 개입을 배제하고 ② 제작자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추측, 판단, 의견일 경우 이를 명시)하며 ③ 기획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취재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기사나 원고 작성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공정성(균형 잡힌 입장)은 ①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해 방송에 반영하고 기획의도에 반하는 내용은 외면하는 태도를 배제해야 하고 ② 이해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는 방송 제작을 해야 하며 ③ 찬반양론 대립 시 양측의 주장 단순열거에서 나아가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다양성은 ①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 소개하고 ② 다수 뿐 아니라 소수의 의미 있는 의견도 비중 있게 방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① 방송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하고 ②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삼감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수행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위험성/공격성 부각, 예측불가능, 회복불능, 식별가능(비정상성), 비참함, 무능성, 비사교성, 신뢰 못함, 사회의 짐, 감금해야할 대상으로 유목화 된 10 가지 부정성을 부각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성의 상당수는 자극적 용어의 반복적 사용이나 현상의 과장, 입증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인과적 혹은 단정적 진술, 가치 판단적 진술, 제작 의도나 방향에 부합하는 편향된 성격을 띤 추론, 다양한 정보의 의도적 생략 등으로 인해 부각된 것으로 지적되어, 상기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성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정확성이 결여된 방송 내용**으로, 살인, 폭행, 영아 살해 등 상당수의 범행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을 진위 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질병 특성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부정확한 인터뷰 내용을 정확성 여부에 대한 안내나 해설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예; 최면이 기억을 회복시켜준다 등), 정신질환 유병률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의 유병률 최대치만을 보고하여 과장된 통계적 보고를 한 경우 등이 다수 보고 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흉악, 흉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로 범죄 심리학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과 정신병질자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며, 구체적 질환명을 밝히지 않고 정신질환이라는 일반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전반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유발하고 있다.

객관성의 결여 사례로는 ① 자의적 주관에 의한 표현으로, 증상이나 질환과 살인/폭력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예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져서 살해했다), ‘우리사회 생명경시 풍조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걱정됩니다’와 같은 가치판단적 표현, ‘점점 더 흉포해지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와 같이 구체적 근거 없이 과장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② 의견과 사실의 구분 모호하게 방송된 예로,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도인 듯 단정적인 표현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예; 방과 후 아이들의 하굣길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일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남자는 여전히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의견의 상당수가 과장이나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예, 공황장애 환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로 표현해도 되는데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③ 통계의 과장이나 왜곡으로 사건/사고의 횟수나 정도를 부풀리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었고, ④ 과장된 표현의 예로는, 죽음의 두려움, 쓰나미, 악몽, 묻지마 범죄, 시한폭탄, 괴한, 광란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의 반복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는 방송사례로 지적되었다.

공정성의 결여 사례로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해 방송에 반영하고 기획의도에 반하는 내용을 외면하는 태도로, 끔찍한 범행 사건의 보도 시 다양한 발생 원인이나 가해자 특성의 다각적인 상황 정보들은 생략하고 유일하게 정신과 치료 경력만 보도하는 방식(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 보다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외

면하거나 일반인 전체의 범죄 건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정신장애인 범죄 건수만을 그것도 실제 숫자보다 높여 한해 2000건으로 반올림해서 보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방송 기획의도가 정신장애인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공정성 결여 행태가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양성의 결여 사례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정적(특히 위험/공격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졌으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대다수 환자의 모습에 대한 제시는 매우 드물며, 또는 쇠창살 안에서 환자복 입고 지내거나 지저분한 환경에서 비참한 모습을 한 환자의 모습이 부각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혹은 성공한 정신질환자의 사례에 대한 방송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의 결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때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로이 치료의 장으로 나올 수 없고, 심각한 편견과 차별의 결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는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의 경우에는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10 가지 부정성 중 위험성/공격성 부각과 배제해야 할 대상의 두 가지 사례만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뉴스 내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의 경우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과 같은 방송 매뉴얼의 보다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로 살인이나 폭행 등과 같은 범행사건 보도에서 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임을 전제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성/공격성을 부각하고, 이러한 위험성의 당연한 귀결로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배제 혹은

감금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살인이나 각종 폭행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도 유독 경찰의 ‘정신병력 조사계획’만이 진행자의 보도 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있거나, 사건사고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 중에서도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정신병력 만이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더욱이 이러한 보도 행태가 상당수의 사건 사고 때 마다 반복되어 위협성/공격성 이미지는 뉴스의 보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정화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위협성/공격성 이미지의 고착은 진행자의 가치 판단적, 추론적 표현, 정확한 근거 제시 없는 통계보고, 혹은 편향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출처의 의견만을 소개하는 방식 등 보도 프로그램의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는 보도 형태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예; 누구의 의견인지 소개 없이 진행자의 의견을 일반화시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근거 없이 유추하여)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노숙자 역시 정신장애인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 병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일단 정신분열에 따른 묻지마식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한 엄마가 돼 버리는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취재했습니다’). 또한, 뉴스의 경우에는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다시보기를 할 수 있어 해당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할 수 있는 다시보기용 기사 제목이 별도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제목의 상당수에서 선정적, 자극적인 언어사용이 발견되어 이러한 기사 제목만으로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묻지마 범죄 **만연**’,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 ‘정신이상 증세 고속버스 기사 **광란의 질주**’, ‘정신병원 환자 3명 집단 탈주 **살해 위협**’, ‘**모성 버리는 병** 산후우울증’,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수 6만 명 육박’ 과 같은 유형의 기사제목은 용어의 자극성, 선정성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며 비객관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방송의 단면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재 및 기사작성 과정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취재 및 기사/원고 작성 과정을 위한 매뉴얼>

정신장애인 관련 뉴스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 및 기사작성 과정에서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1. 정확성

- 1) 살인이나 폭행 등 각종 범행 사건에 대한 보도 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을 진위 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하지 않는다.
- 2) 살인이나 각종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도 정신병력 만을 강조하거나, 정신질환임을 전제하거나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공격성과 위험성을 정신질환자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정화하지 않는다.
- 3) 질병 특성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한 부정확한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성 여부에 대한 안내나 해설을 자막 등으로 병행하여 제시한다.
- 4) 정신질환(mental illness)과 정신병질자(psychopath)를 구분해야 하며, 가급적 정신장애라는 일반적 명칭보다 구체적 질환명을 밝히도록 한다.

2. 객관성

- 1) 증상이나 질환과 살인/폭력의 관계를 근거도 없이 인과적으로 표현하거나, 가치 판단적 표현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없이 폭력

성이나 위험성을 과장하는 등의 자의적 주관에 의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2) 과장이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한다.

3) 사건/사고의 횡수나 정도를 부풀리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통계적 과장이나 왜곡 혹은 부정확한 통계적 보고를 지양한다.

4) 과장되고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의 반복 사용을 지양한다. 특히, 뉴스 다시보기 기사제목의 경우 기사 제목만으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 자극적인 용어사용을 배제한다.

3. 공정성

1) 범죄 사건의 보도 시 다양한 발생 원인이나 가해자 특성의 다각적 상황 정보들은 생략하고 유일하게 정신과 치료 경력만 보도하는 등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통계 보고만 반영하고, 이에 반하는 다른 관련 중요 정보를 외면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4. 다양성

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 일변도에서 나아가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균형적으로 보도한다.

5. 사회적 책임성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후 방영되기 전에 방송으로 인해 조장/유지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방송제작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방영 전에 전문가와 당사자 및 가족들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한다.

다.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 사용에 대한 매뉴얼

1) 영상편집의 일반 원칙

지상파 세 방송국의 영상편집에 대한 매뉴얼은 일반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인 편집기법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별 기법별 별도의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영상편집의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방송 3사의 영상편집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영상편집의 일반 원칙>

KBS	<p>(1) 인권에 대한 배려 편집자는 편집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사려깊은 편집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p> <p>(2) 편집의 객관성 유지 편집자는 편집에 있어서 ~~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 편집의 객관성은 단순히 동일한 시간배분 같은 1차적인 균형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집자는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p>
MBC	<p>(1) 영상 편집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편집이 요구된다. 편집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편집은 자제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배려해야하며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p>
SBS	<p>5. 주의해야 할 영상 가공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가능하면 실사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재원 보호나 초상권 보호,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p>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 가공을 할 수 있다.
 영상의 가공 빈도가 많아지고 편집의 재량 범위가 확대될수록 SBS 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자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중략)

영상편집에 대한 방송사별 일반 원칙을 종합하면, 불가피한 경우라면 영상 가공을 배재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려 깊은 편집태도 견지, 개인 의견과 감정을 배제한 객관성의 유지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제시, 사실 왜곡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자극적, 선정적 영상편집의 자제, 시청자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이미지 영상의 자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2) 영상 미디어 편집 기법별 매뉴얼

모니터 대상이 되었던 9개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사용된 다양한 영상 미디어 편집기법으로는 음악과 음향, 조명과 배경화면, 자막, 카메라 앵글, 의도적 영상의 삽입, 모자이크 처리, 재연이 있다. 다음에 이들 각각에 대한 지상파 세 개 방송국의 매뉴얼 발췌 표가 제시되었으며, 각 매뉴얼 표의 내용에 대한 종합요약과 이를 적용한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 및 각각의 기법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① 음악과 음향

KBS	<p>1) 음악의 사용 (중략)특정 이미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음악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p> <p>(2) 음성과 음향 (중략)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어조 및 억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효과음의 사용은</p>
------------	---

MBC	<p>피해야 한다. 특히 현장음이 중요한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효과음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p> <p>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취재영상에 담긴 현장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악과 효과음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스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음악과 효과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p>
SBS	<p>4) 효과음 처리</p> <p>영화나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의 효과음 사용은 사실성과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가. 뉴스의 경우, 효과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자연음의 대체가 아닌 코드성 효과음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나. 코드성 효과음을 사용할 때에도 방송 수용자의 감정이나 판단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방송사 매뉴얼을 종합해볼 때, 방송 3사 모두 음악과 효과음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다큐멘터리나 뉴스의 경우 사실성과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미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음악을 사용하거나 방송 수용자의 감정이나 판단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수행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9개에서 긴장감,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을 조성하는 각종 음악이나 음향효과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정신질환의 위험성, 폭력성, 증상의 심각함을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음악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실제 방송의 음악과 음향이 정신장애 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뉴스의 경우 시사/교양 프로그램처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긴장감이나 공포심을 조장

하는 음악과 음향, 그리고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도 없이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효과음의 사용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효과음으로 시청자의 판단을 유도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음향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음악과 음향>

1. 정신질환 증상과 특성을 과장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되게 혹은 부당하게 강화하는 도구로 음악과 음향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장감,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② 조명과 배경화면

KBS	프로그램에서의 그래픽은 간결하고 명확 해야 한다. 그래픽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하고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제작 해야 한다. 2D, 3D 그래픽 모두 그 색깔과 움직임이 공영방송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높은 완성도를 지녀야 한다.
MBC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알기 쉽게 제작 해야 한다. 특히 전쟁이나 범죄 등 인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3차원 컴퓨터그래픽은 사실을 극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제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SBS	구체적 매뉴얼 제시 없음

방송 3사에서 조명과 배경화면에 대한 개별적인 편집 관련 매뉴얼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방송 3사에서 제시한 영상편집의 일반원칙을 적용해볼 때, 사실 왜곡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자극적, 선정적 영상편집의 자제, 시청자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이미지 영상의 자제를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니터링 수행 결과, 상당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붉은색이나 파란색 등 원색의 배경화면과 번개 치듯 번쩍이는 조명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이미지를 자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부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뉴스의 경우 앵커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피가 터지는 장면이나 몽둥이를 들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을 후려치는 모습이 사용되거나, 해병대 총기 사건의 경우 총 들고 서 있는 군인과 수류탄 터지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CG)처리 되어 배경화면으로 사용되는 등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을 더 무섭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조명과 배경화면 관련 영상 편집기법들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같은 부정성을 강조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사용되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명과 배경화면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조명과 배경화면>

1.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효과를 내는 조명이나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을 과장하려는 의도의 배경화면 사용을 자제한다.

③ 자막

<p>KBS</p>	<p>자막의 오류는 시청자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으며,~중략.</p> <p>① 인터뷰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막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에 맞게 써야 한다.</p> <p>② 자막의 글자 수, 크기, 속도 등은 시청자가 보기 편하도록 설정한다.</p> <p>③ 과도하게 조잡하고 현란한 자막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한다.</p> <p>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는 용어는 드라마 등 맥락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자막으로 처리할 때에는 현재 통용되는 용어를 병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님, 소경, 애꾸눈, 사팔뜨기-> 시각 장애인 * 귀머거리-> 청각 장애인 * 병어리, 말더듬이, 언청이 -> 언어 장애인 * 절름발이, 앉은뱅이, 외팔이-> 지체 장애인 * 꼽추->척추(후만증) 장애인 * 정신박약, 열간이 -> 지적 장애인
<p>MBC</p>	<p>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잡한 글씨체, 과도한 크기의 자막 등은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영상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p>
<p>SBS</p>	<p>1. 방송 자막에 관한 지침</p> <p>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다.(중략) 왜곡된 글자 형태나 현란한 색상 등을 사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자막은 시청자들의 시청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p>

자막에 대한 각 방송사 매뉴얼을 종합해보면, 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색채나 글자형태, 크기 등을 통한 사실 과장이나 왜곡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던 교양/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죽음의 공포’, ‘무차별 폭행’, ‘길거리 시한폭탄’ 등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을 부각하거나 잔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었으며, 검은 배경에 붉은 글씨 등으로 자막을 내용을 강조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의 경우에도 폭력성과 위험성을 부각하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용어가 주요 자막에서 사용되었는데, 자막 사용의 목적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있다고 할 때, 해당 뉴스가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은 결국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임을 시사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막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자막>

1. 자막의 사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 부각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되게 혹은 부당하게 강조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막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용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터뷰 대상자나 출연자가 잘못 사용한 용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 자막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잡도록 한다.

④ 카메라 앵글

KBS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생략하거나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위장해 서는 안 되며, 앵글의 조작, 그래픽의 왜곡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 공정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에 대 한 일종의 기만행위다.
MBC	구체적 매뉴얼 제시 없음
SBS	상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람들의 인터뷰 화면을 방영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사이즈, 촬영 각도 등에 주의하여 영상적으로 어 느 한쪽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장면이 빠르게 회전하거나 어지럽게 흔들리 는 카메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 뿌옇게 처리되는 주변 화면과 빙빙 도는 화면 구성, 파손된 차량이나 부서진 전봇대 사진의 확대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각종 카메라 앵글 기법이, 뉴스의 경우에도 빠르게 쫓아가는 카메라, 흔들리는 영상, 빠른 줌인 등을 통해 긴장감 불안감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앵글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 의 내용을 제안한다.

<p><카메라 앵글></p> <p>1. 불안감이나 긴장감,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카메 라 앵글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필요하게 과장 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p>
--

⑤ 의도적 영상 삽입

<p>KBS</p>	<p>(6) 이미지 커트 이미지 커트는 취재대상에 대한 제작자의 이미지를 실사로 바꾼 영상을 말한다.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 커트 사용은 표현의 주요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커트는 제작자만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이미지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뉴스에서의 사용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이미지가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p>
<p>MBC</p>	<p>(1) 영상 편집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편집이 요구된다. 편집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편집은 자제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p>
<p>SBS</p>	<p>3) 이미지 영상 이미지 영상은, 추상적인 내용의 밀그림이나 재연의 대체 영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방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표현으로 시청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 사실적인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이미지 영상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나. 폭력, 성적 표현 등의 강렬한 이미지는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영상 처리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가 통상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커트를 영상 속에 삽입해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서브리미널 기법은 담당 CP의 허가를 얻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p>

방송 3사의 매뉴얼을 종합할 때, 기획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관련성 적은 영상의 사용, 자극적 선정적 영상 편집 등은 과장, 사실왜곡의 위험

을 안고 있으며, 결국 객관성의 훼손과 시청자 판단 오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니터링 분석 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흥기를 휘두르는 검은 그림자나 실루엣, 균열된 얼굴 등의 과도한 공포장면의 삽입, 구급차, 수술대, 영정사진과 시신 운송 장면, 유서 등 정신장애의 위험성,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내용과 연관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뉴스의 경우에도 단일 사고 영상의 반복제시로 이러한 현상이 빈번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자료를 객관적 수량적 자료 제시 방식인 그래프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장애의 위험성을 전형적인 특징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기획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왜곡과 과장이 발견되었다. 사용되었던 편집기법의 구체적 예들이 위험성에 초점을 둔 부정적 이미지의 강조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영상편집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영상 삽입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의도적 영상 삽입>

1.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면의 삽입 혹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의도적인 영상 삽입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⑥ 재연

<p>KBS</p>	<p>① 시청자가 재연된 영상을 실사(현실을 기록한 영상)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멘트 등으로 재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p> <p>② 중요한 사실을 생략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재연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p> <p>③ 재연은 가능한 한 섬세한 사항까지 사실과 일치하도록 연출한다. 필요 하다면 재연이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한계를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 재연 시 폭력과 흥기, 상처, 성표현 등을 줄거리와 관계없이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④ 뉴스에서의 재연은 원칙적으로 삼가야 한다.(중략)부득이 재연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재연과 실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p>
<p>MBC</p>	<p>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실제 영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p>
<p>SBS</p>	<p>재연 영상은 증언이나 자료를 기초로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연 영상은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영상 수단이다. 그러나 재연의 남용은 방송의 신뢰성과 리얼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p> <p>가. 인터뷰나 현장 스케치 등의 다른 영상 처리로, 재연 영상을 피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p> <p>나. 재연 영상 방송시 시청자들이 실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이나 멘트로 재연임을 밝혀야 한다. (중략)</p> <p>라. 재연시 과도한 폭력과 흥기의 노출,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을 피해야 한다.</p> <p>마. 원칙적으로 뉴스에서는 재연을 하지 않는다.</p>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모니터링 대상 9 개중 7개 프로그램

에서 재연임을 밝히지 않은 재연장면이 상당수 제시되었으며, 재연 시 검은 배경의 사용,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얼굴표정 과장, 혐오적/위험한 모습의 재연자 설정 등,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재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별 재연 관련 매뉴얼의 상당수가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구현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방송사 매뉴얼에 따르면, 뉴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연을 하지 않아야 하나, 모니터링 대상 뉴스에서는 상당한 빈도로 재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재연’표시가 부재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강화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재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연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재연>

1.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2. 재연 시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⑦ 모자이크

KBS	<p>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의 기법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인터뷰를 할 때, 정보 제공자나 근친자의 신변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모자이크 등 영상가공이 인정된다.</p> <p>일단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으로 출연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경우에는 인터뷰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p>
------------	--

MBC	구체적 매뉴얼 제시 없음
SBS	모자이크 처리는 취재원의 익명성과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중략)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의 남용은 자칫 방송의 신뢰성을 해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면,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 여부의 결정시에는 사안별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위험성/공격성을 비롯한 심각한 수준의 스티그마가 부여된 질환이며, 해당인이나 가족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거나 노출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방송의 내용이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모자이크 처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주거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진 방송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정신장애인이 취재원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과도한 공포심의 조장에 기여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이크 편집 기법 활용을 위한 매뉴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p><모자이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나 정신장애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되, 모자이크 처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수치심을 동반하는 현상임을 은연중 전달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2. 다른 신체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감소에 방송이 노력한다.

시사/교양 및 뉴스 방송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는 방송을 하기 위한 매뉴얼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시사/교양 및 뉴스 방송 매뉴얼>

방송제작 / 편집과정	과정별 매뉴얼
<p style="text-align: center;">언어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차별적 표현 / 오도 가능성</p>	<p>1. 방송 진행자는 물론이고, <u>취재원이 사용한</u>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경멸적/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도 자막 등의 사용을 통해 바로 잡아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p> <p>예) ‘정신병자’, ‘(맛이)간 사람’, ‘지랄한다’, ‘천치’, ‘정신줄을 놓았다’, 등</p> <p>2. 방송 진행자는 물론이고, <u>취재원에 의해</u>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 전달될 경우에도 자막 등의 사용을 통해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p> <p>예) ‘애는 못 고쳐요, 절대 안 나아요(회복불능성 강조)’,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정신과 치료의 비정상성 강조)’, ‘잘못되면 정신병원에 가두면 되지(치료가 아니라 가두어야 할 존재로 인식)’, ‘애는 상태가 원리 이래서 (사람들과) 부대끼면 더 안 좋아요’(증상을 고정된 성격으로 묘사하여 고립과 격리를 정당화) 등</p>
<p style="text-align: center;">기사 제목</p>	<p>1. 뉴스 다시보기 기사 제목에서 정신질환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언어표현에 신중을 기한다.</p> <p>예) ‘묻지마 범죄 만연’, ‘모성 버리는 병 산후우울증’,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정신장애인 파출소 코앞 ’칼부림‘..대책 마련 심각’, ‘정신병원 환자 3명 집단 탈주, 살해 위협’ 등</p>

취재와 기사 원고 작성	1. 개요	<p>1. 정신장애인 관련 뉴스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 및 기사작성 과정에서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를 기울인다.</p>
	2. 정확성	<p>1. 살인이나 폭행 등 각종 범행 사건에 대한 보도 시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추측을 진위 여부 확 인 없이 그대로 방송하지 않는다. 예) ‘정신장애인의 소행인 듯’, ‘경찰은 일단 정신분열에 따 른 묻지마식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휘 두른 노숙자 역시 정신장애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 니다’(범인이 누구인지도,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도 않은 범 죄 사건의 초기 보도 단계에서)</p> <p>2. 살인이나 각종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도 정신병력 만을 강조하거나, 정신질환임을 전제하 거나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공격성과 위협성을 정신질환자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정화하지 않는다. 예)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초기 수사 단계 에서 다양한 정황 중에서도 우울증 앓았다는 사실만이 해 당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도) 예) ‘피의자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 다’(사건의 다른 정황에 대한 보도는 생략하고 정신병력 만 강조)</p> <p>3. 질병 특성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한 부정확한 인터뷰 내 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성 여부에 대한 안내나 해 설을 자막 등으로 병행하여 제시한다. 예) ‘최면이 기억을 회복시켜준다’, ‘공황장애 증상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달고 산다’, ‘소리까지 환청이 들리고 귀 이명 이 더 커져서~(공황장애 환자 관련 보도)’ 등</p>

	<p>4. 정신질환(mental illness)과 정신병질자(psychopath)를 구분해야 하며, 가급적 정신장애라는 일반적 명칭보다 구체적인 질환명을 밝히도록 한다.</p> <p>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흉악, 흉포해지고 있다’,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정신보건 관련 전문가가 아닌 범죄심리학자의 의견 제시로 인해 정신질환과 정신병질자 구분이 모호해짐, 특정 질환명이 아닌 ‘정신질환’이라는 일반적 명칭의 사용으로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유발)’</p>
<p>3. 객관성</p>	<p>1. 증상이나 질환과 살인/폭력의 관계를 근거도 없이 인과적으로 표현하거나, 가치 판단적 표현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폭력성이나 위험성을 과장하는 등의 자의적 주관에 의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p> <p>예)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져서 살해했다’(근거 제시 없는 인과적 표현)</p> <p>예) ‘점점 더 흉포해지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과장적 표현)</p> <p>2. 과장이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한다.</p> <p>예)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현상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일반화) 등</p> <p>3. 사건/사고의 횟수나 정도를 부풀리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통계적 과장이나 왜곡 혹은 부정확한 통계적 보고를 지양한다.</p> <p>예)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정확한 통계 수치나 출처 보도 없이 보고)</p>

		<p>예) ‘우리나라 성인 6 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구체적 병명이나 정확한 통계치 제시 없이 과장) 등</p> <p>4. 과장되고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의 반복 사용을 지양한다.</p> <p>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괴한’, ‘공포의 쓰나미’, ‘광란’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의 집중적, 반복적 사용</p>
	<p>4. 공정성</p>	<p>1. 범죄 사건의 보도 시 다양한 발생 원인이나 가해자 특성의 다각적 상황 정보들은 생략하고 유일하게 정신과 치료경력만 보도하는 등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p> <p>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의 원인이나 다양한 정황 언급 생략하고, 정신과 치료경력이나 입원횟수 등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취합) 등</p> <p>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통계보고만 반영하고 이에 반하는 다른 관련 중요 정보를 외면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p> <p>예) ‘정신질환자 범죄 한 해 2천 건’(정신장애인 범죄율이 전체 인구 중 1%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사실 외면하고, 일반인 전체 범죄 건수 언급 없이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건수만 보고)</p>
	<p>5. 다양성</p>	<p>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 일변도에서 나아가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균형적으로 보도한다.</p> <p>예) ‘증상이 호전’됐거나 ‘사회복귀에 성공한 사례’ (긍정적 이미지 함께 제시) 등</p>

	<p>6. 사회적 책임성</p>	<p>1.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방송으로 인해 조장/유지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방송제작자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방영 전에 전문가와 당사자 및 가족들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한다.</p> <p>예) 방송 관계자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결여된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자유로이 치료의 장으로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심각한 편견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p> <p>예)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정신보건 전문가를 포함한 방송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의 편견 및 차별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p>
<p>영상 미디어 편집 기법의 사용</p>	<p>1. 음악과 음향</p>	<p>1. 정신질환 증상과 특성을 과장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되게 혹은 부당하게 강화하는 도구로 음악과 음향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긴장감,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한다.</p> <p>예) ‘빠른 템포’의 ‘타악기 음악’이나 ‘날카로운 기계음’, ‘사이렌 소리’ 등 전형적인 긴장감 및 불안감 조성 효과를 갖는 음악이나 음향의 반복적 사용</p>
	<p>2. 조명과 배경 화면</p>	<p>1.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효과를 내는 조명이나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을 과장하려는 의도의 배경화면 사용을 자제한다.</p> <p>예) ‘붉은색’, ‘새파란 색’과 같은 자극적인 원색의 배경이나, 번개 치듯 번쩍이거나 강렬한 조명 등의 빈번한 사용을 통한 부정적, 자극적 이미지 강조</p>
	<p>3. 자막</p>	<p>1. 자막의 사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 부각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되게 혹은 부당하게 강조하는 수단이</p>

		<p>아니라, 자막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용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p> <p>예) “호흡이 약간 곤란해지죠”-> “호흡이 곤란해지죠”(취재원의 인터뷰 내용 누락을 통해 내용을 과장하는 자막) 예) ‘무차별 폭행’, ‘길거리 시한폭탄’ ‘동거남 살인’, ‘남편살인미수’, ‘얼굴이 다 내려앉고 콧대도 무너지고’ 등(부정적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의 자막 사용) 예) ‘붉은색’ 자막(위험성을 부각하는 자막 글씨)</p> <p>2. 인터뷰 대상자나 출연자가 잘못 사용한 용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 자막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잡도록 한다.</p> <p>예) 취재원에 의해 ‘정신병자’, ‘천치’, ‘(맞이) 간 사람’, ‘얼간이’ 등과 같이 장애에 대한 경멸/비하적 표현 사용시 현재 통용되는 용어 병기 필요 예) 취재원에 의해 ‘공황장애환자가 환청으로 고통 받는다’, ‘최면이 기억을 회복해준다’ 등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 혼란을 초래할 경우 자막을 통한 부가적 설명 필요</p>
	<p>4. 카메라 앵글</p>	<p>1. 불안감, 긴장감,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카메라 앵글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p> <p>예) 빠르게 쫓아가거나, 빠르게 회전,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파손된 차량이나 부서진 전봇대 사진의 확대, 빠른 줌인 등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심의 조성</p>
	<p>5. 의도적 영상 삽입</p>	<p>1.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면의 삽입 혹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의도적인 영상 삽입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p> <p>예) ‘흉기를 휘두르는 검은 실루엣’이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 ‘영정사진과 시신 운송 장면’ ‘당사자의 피부질환 약 노</p>

		<p>출' '몽크의 <절규> 삽입',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그림' '어두운 배경에 아기 인형을 내던지는 장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살인사건 화면 삽입' 등</p>
	<p>6. 재연</p>	<p>1.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한다.</p> <p>2. 재연 시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예) '아이를 던지는 장면'이나 '학대하는 모습' '과도한 폭력 장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선정적인 장면 등의 재연</p>
	<p>7. 모자이크</p>	<p>1.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되, 모자이크 처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수치심을 동반하는 현상임을 은연중 전달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예) '동네 주민들'의 모습의 모자이크 처리(정신장애인이 취재원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과도한 공포심 조장 가능성 고려)</p> <p>2. 다른 신체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감소에 방송이 노력한다.</p>

2.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 하는 신문기사 보도 매뉴얼

본 연구는 최근 1년간 국내 5개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장애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기사에 묘사되거나 암시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성완 외(2000) 연구에 제시된 차별적 내용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관련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뒤 김성완 외

(2000)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사 보도 방식 및 내용의 변화 경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내용은 최근 1년 기사에 대한 본 분석 결과와 김성완 외(2000)와의 비교에서 도출된 보도상의 문제점들을 정리 제시하고 이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된 준칙들에 비추어 평가한 것으로, 신문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 하는 신문기사 보도 매뉴얼>

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의 범주화 지양

- 정신장애를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대상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신과적 문제는 국민의 1/3이 평생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므로 ‘그들’, ‘저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신장애인을 사회 일반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기술해서는 안 된다.
- 사건사고를 개인적 차원의 병리문제나 이야기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이 의심되는 사례를 흥미위주의 기삿거리로 삼거나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사 제목에 ‘죽이고 싶다’, ‘미쳤던’, ‘환각상태에 빠진 정신병자들이야’ 등 관련자들의 극단적 문구를 인용 처리하여 사용하거나, ‘도화선’, ‘묻지마’, ‘정신분열 댄스’ 등의 자극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및 스티그마 지양

- 행동의 원인을 지목할 때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진단명이나 ‘정신질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술은 독자로 하여금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과 사고를 불가분의 관계로 지각하도록 하여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기사분석 결과, 사건사고 등을 기술할 때 구체적 설명 없이 ‘우울증’, ‘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기사가 전체의 절반가량 되었다.

- **행위자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장애가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범행의 원인에 대한 경찰의 추정이나 의견을 독자가 사실적 결론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밝혀낸 다양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임에도 다른 사실들보다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마치 정신장애가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개인의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을 기술할 때 그것이 정신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신장애가 사건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유형의 장애가 모두 실제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 보다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정신장애와 사건사고를 일치시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 **정신장애를 사건사고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된다.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과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히 살인, 폭력, 총기사고, 자살 등의 사건사고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조사결과를 전하는데 있어 사건의 일차적 원인을 피의자의 정신 병력에 두려고 하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정신감정을 고려하는 듯 한 인상을 보여준다. 이는 강력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배경을 두루 고려하기 보다는 피의자의 정신적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불균형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 **기사 제목은 중립적, 객관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기사제목에 나타난 편견의 예로, ‘총기난사는 정신장애다’, ‘정신분열 진단 김 상병 “죽이고 싶다” 메모’, ‘원로배우 김추련, 우울증 투병 자살’ 등 명시된 질환 다양한 증상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증상을 내세워 질환 특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식의 표현은 정신장애와 극단적 결

과를 동일시할 수 있는 편견을 조장하므로 중립적, 객관적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 **동일 사건에 대해 제목과 본문의 표현 일부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기사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본 기사분석 결과 인터넷 기사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내용 없이 문구만 수정하여 며칠 사이에 동일 내용을 11회나 반복하여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기사 베끼기’와 ‘반복보도’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를 조장,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

다. 공익 증진

-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이슈를 개인적 차원의 심리정신적 문제로 축소하고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군 입대 후 폭력피해를 계기로 정신적 문제가 발병한 경우 그 원인을 개인적 취약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군 문화와 관련된 사건사고(예, 총기난사, 자살, 폭행 등)를 다룬 기사는 사건사고의 원인에 대해 개인의 정신질환에만 집중한 나머지, 군의 독특한 문화의 개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 **정신장애의 극단적 증상들만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수치, 소외, 고립의 내용을 부각시켜 기술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사내용은 사회 일반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를 조장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지연시킨다. 나아가 정신장애의 재활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역행하는 메시지를 확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저해한다.
- **정신 보건적 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나 기술은 공익 증진의 차원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극소수 기관의 문제점들이 전체 기관이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 중립적 보도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인 일반 시민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의 입원에 대한 기술에 ‘격리’, ‘수감’ 등의 편파적, 차별적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8).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1).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 김성완 외(2000).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신경정신의학*. 39권 5호, 838-848
- 대검찰청(2011), 2010 범죄백서.
- 문화방송(2009). MBC 방송제작 매뉴얼.
- 방송통신위원회(2011).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방송 매뉴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맹제, 박종익, 배안 등)
- 서미경 외(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선혜, 서진환(2010) 한국 성인의 정신건강역량: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127-158.
- 이충순, 이동윤, 황용석(1996).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질환자 범죄기사의 분석. *신경정신의학*, 35, 1132-1143.
- 장혜경, 우아영(2011).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한 정신장애 담론: 구별짓기의 완성. *사회복지 연구*, 42(1): 179-217.
- 정신장애인인권증진토론회 자료집(2010). 국회의원 박정숙의원실.
- 조수영, 김정민(2010).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파TV 뉴스분석. *한국언론학보*, 54 권 5호: 181-204.
- 한국방송(2010). KBS 방송제작 매뉴얼 2010년 개정판.
- 한국방송(2011). KBS 장애인 관련 방송 제작 매뉴얼.
- 한국신문윤리위원회(2009). 신문윤리실천요강.

SBS(1998). SBS 방송매뉴얼.

Berlin, F. S., & Malin, H. M.(1991). Media distortion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recidivism and psychiatric rehabilit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572–1576.

Brown, K., & Bradley, L. J.(2002). Reducing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4(1):81–87.

Coltrane, S. & Messineo, M.(2000). The perpetuation of subtle prejudice: Race and gender imagery in 1990s television advertising. *Sex Roles*, Vol.42:363–389

Cocozza, J. J., Melick, M. E., & Steadman, H. J.(1978). Trends in violent crime among ex-mental patients. *Criminology*, 16:317–355.

Corrigan, Patrick W., Watson, Amy C., Warpinski, Amy C., & Gracia, Gabriela(2004). Stigmatizing attitudes about mental illness and allocation of resource to mental health servi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4): 297–307.

Daniel Yankelovich Group.(1990). 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chronic mental illness. Boston, MA: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Day, D. M., & Page, S.(1986). Portrayal of mental illness in Canadian newspaper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1:813–816.

Diefenbach, D. L.(1997). The portrayal of mental illness on prime-time televi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289–302.

Englandkennedy, E. S.(2008). Media representations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Portrayals of cultural skepticism in popular media.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41(1): 91–117.

Eisenhauer, J.(2008). A visual culture of stigma: Critically examining

- representations of mental illness. *Art Education*, 61(5):13–18.
- Fruth, L., & Padderud, A.(1985). Portrayals of mental illness in daytime television serials. *Journalism Quarterly*, 62:384–387.
- Granello, Darcy Haag, Pamela S. Pauley & Ann Carmichael(1999). Relationship of the media to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8(2):98–110.
- Granello, Darcy Haag, & Pauley, Pamela S.(2000). Television viewing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tolerance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2):162–175.
- Greg, M.(2007). Mental health and mass media: room for improvement. *The Lancet*. Vol.370:1015–1016
- Jemelka, R., Trupin, E., & Chiles, J. A.(1989). The mentally ill in prison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0:481–485.
- Kaliebe, K. & Sondheimer, A.(2002). The media: Relationships to psychiatry and children: A seminar. *Academic Psychiatry*. 26(3):205–215.
- Kamalipour, Yahya R.(2000). The tv terrorist: Media images of middle easterners. *Glibal Dialogue* 2, 4:88–96.
- Link, B. G., Phelan, J. C., Bresnahan, M., Stueve, A., & Pescosolido, B. A.(1999). Public conceptions of mental illness: Labels, causes, dangerousnes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1328–1333.
- Penn, David L., Chamberlin, Cliff, & Mueser, Kim T.(2003). The effects of a documentary film about schizophrenia on psychiatric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9(2): 383–391.
- Ramasubramanian, S.(2007). Media-based strategies to reduce racial

- stereotypes activated by news stori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2):249-264.
- Shain, R., & Phillips, J.(1991).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Labeling and stereotyping in the news. In L. Wilkins & P. Patterson (Es.), *Risky business: Communicating issues of science, risk, and public policy*: 61-74.
- Signorielli, N.(1989).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on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3:325-331.
- Stout, Patricia A., Villegas, Jorge, & Jennings, Nancy A.(2004). Images of mental illness in the media: Identifying gaps in the research. *Schizophrenia Bulletin*, 30(3): 543-61.
- Swanson, J. W., Holzer, E., Ganju, V. K., & Jono, R. T.(1990). Violence and psychiatric disorder in the community: Evidence from the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761-770.
- Teplin, L. A.(1990). The prevalence of severe mental disorder among male urban jail detainees: Comparison with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639-669.
- Thornton, J. A & Wahl, O. F(1996). Impact of a newspaper articl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17-25
- United States 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1978). Report to the resident from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rij A., Schie E. V. & Cherryman J.(1996). Reducing ethnic prejudice through public communication programs: A social-psychological

- perspectiv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0(4): 413–420.
- Wahl, O. F.(1995). *Media madness: Public images of mental illness*.
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ersity Press.
- Wahl, O. F.(2003). News media portrayal of mental illnes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46(12):1594–1600.
- Wahl, O. F. & Roth, R.(1982). Television images of mental illness: Results of a metropolitan Washington media watch. *Journal of Broadcasting*, 26:599–605.
- Warner, R.(2005). Local projects of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programme to reduce stigma and discrimination. *Psychiatric Services*, 56(5): 570–575.
- Wilson, Clair, Nairn, Raymond, Coverdale, John, & Panapa, Aroha(1999). Mental illness depictions in prime-time drama: identifying the discursive resourc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3: 232–247.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 *The World Health Report 2001*.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인쇄일 : 2012년 12월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 6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go.kr>

전 화 :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832**

팩 스 : 02)2125-9848

연구수행기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 02)313-7593 E-mail : h6332@chol.com

ISBN 978-89-6114-282-3 93330 비매품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41 금세기빌딩 장애차별조사1과
TEL.02)2125-9832 <http://www.humanright.go.kr>

ISBN 978-89-6114-282-3 93330